



### 저작자표시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2007년 8월  
석사학위논문

한국 자유무역지역제도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朝鮮大學校 大學院

貿易學科

張 凱

한국 자유무역지역제도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Development Plan of  
Free Trade Zone System in Korea

2007년 8월 24일

朝鮮大學校 大學院

貿易學科

張 凱

한국 자유무역지역제도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指導教授 李 廷 浩

이 論文을 經營學碩士學位 申請 論文으로 提出함

2007년 4월 일

朝鮮大學校 大學院

貿 易 學 科

張 凱

張凱 의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委員長      朝鮮大學校 教授 \_\_\_\_\_ 印

委 員      朝鮮大學校 教授 \_\_\_\_\_ 印

委 員      朝鮮大學校 教授 \_\_\_\_\_ 印

2007년 5월 일

朝鮮大學校 大學院

# 목 차

## ABSTRACT

### 제1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1
제 2 절 연구의 범위.....	3

### 제2장 자유지역의 일반적 고찰

제 1 절 자유지역의 종류.....	4
제 2 절 자유지역의 경제적 효과.....	11
제 3 절 자유무역지역과 관세자유지역의 비교.....	12
제 4 절 외국의 운영사례.....	28

### 제3장 자유무역지역의 현황과 문제점

제 1 절 자유무역지역 통합.....	38
제 2 절 자유무역지역의 현황.....	42
제 3 절 자유무역지역의 문제점.....	59

### 제4장 한국 자유무역지역의 발전 방안

제 1 절 한국 자유무역지역 발전의 추세.....	63
제 2 절 제도적 측면에서의 발전 방안.....	64
제 3 절 정책적 측면에서의 발전 방안.....	69
제 4 절 운영 측면에서의 발전 방안.....	72
제5장 결 론 .....	78
참고문헌.....	82

## *ABSTRACT*

### *A Study on the Development Plan of Free Trade Zone System in Korea*

Zhang Kai

Advisor : Prof. Lee Jeong-ho Ph.D.

Department of Trade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

After the economic crisis in 1997, Korea introduced many policies and systems to overcome the economic crisis. Korea carried out active guiding investment systems in Duty-free zone.

The systems can stimulate the economy increasing by guiding investment. In Duty-free zone, the policy lays particular emphasis on the kinds of commodity, but in Free trade zone, the policy lays emphasis on the kinds of commodity and manufacturing.

More or less, there are some differences in these policies. We need not consider the differences and they can practice independently according to the laws, so it brought about some unnecessary chaos to the foreign investors and made the credit of government decline. The second superpower of world economy, Japan and China market and the Southeast Asia economic growing center, to make the Free trade zone operate efficiently, Korea has emerged



the Duty-free zone into the Free trade zone in July, 2004.

Although the merge has been realized, there are some limits. In my thesis, I will discuss and analyze the establishment operation and relative laws of the emerged Free trade zone, then I will bring about some viewpoints and solutions in systems and politics.

I have to make the background of my thesis and researching scope definite. In order to make the theme of my thesis understood easily, I will state the relative conceptions of Free trade zone, free trade, the kinds of free trade and the economic effects. It also can be understood by comparing some foreign enterprises examples according to their characteristics.

By analyzing designated order and operation of the Free trade zone in Korea, the relative laws and regulations, we can find some problems as follows:

First, in system aspect, we can find the problem is the reduction of Duty-free articles, the time limit of installment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unified facilities are decided on the laws of Free trade zone.

Second, in politics aspect, we can find the problem is the volunteer system of the suppliers lay stress on the commodity policy that take the ports as trade center.

Third, in operation aspect, we can find the problem is the managing rights limit of the chief executive. No matter the kinds of the importer, to fulfill the taxation and manage method on commodity. to form a system to limit the change of production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each zone.

In the last paragraph of my thesis, to consolidate the effect of Free trade zone, improve the manufacturing and stimulate economy I bring about some concreted improving projects and developing projects.

The projects is as follows:

First, in system aspect ,we can enlarge the scope of Duty-free policy in system aspect. We should abolish the time limit of installment in order to consolidate the commodity center in Free trade zone. Moreover, Free trade zone should omit the agreement that controlled by the Ministry of Finance when make a designation. The designated order should be simplified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unified facilities should be consolidated. The laws of the Free trade zone should be abided strictly.

Second, in politics aspect ,we should introduce some relative policy to the needers and supply them with effective interest.

Third, in operation aspect ,the managing rights that the chief executive of Free trade zone, the import declaration of Tax-paid commodity should be depended on the consumption. The characteristic of the import should agree to the policy of Free trade zone.

# 제 1 장 서 론

## 제1절 연구의 배경

1997년 외환위기로 말미암아 발발한 경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하여 한국 정부는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도입해 왔다.

1998년 이후 새로이 도입된 제도로는 관세법을 개정하여 특허보세구역의 여러 기능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도록 한 종합보세구역(1998년),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지원 등을 대폭 확대한 외국인투자지역(1999년), 우리나라의 주요 공항 및 항만을 동북아의 물류중심기지로 육성하기 위한 관세자유지역(1999년), 제조중심의 수출자유지역에 물류 및 무역기능을 추가하여 확대·개편한 자유무역지역(2000년), 제주도를 국제자유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제주국제자유도시(2002년), 우리나라를 동북아의 비즈니스 중심 국가로 육성하기 위한 경제자유구역(2002년) 등이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외국인투자지역, 관세자유지역, 자유무역지역, 경제자유구역 등은 정부 부처들이 경제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가정에서 외국인 투자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활발히 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들이다. 이들 제도들은 정책 수단이나 중점적 추진 목표에 상이점이 있지만, 외국인 투자의 유치를 중요한 목표 중 하나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된 도입 목적을 갖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이러한 각종 제도의 도입과 적극적 투자 유치 등에 힘입어 외국인 투자규모가 급격히 확대된 뒤 침체기를 거쳐 다시 회복되었으나 2006년 이후 투자액이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다<sup>1)</sup>. 따라서 지속적인 경제회복과 성장을 위하여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환경의 개선이 시급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

1) 외환위기 이후 침체기(2001~2003년)에는 세계 경기침체와 이라크 전쟁으로 인한 테러위협외고조 등으로 국내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져 외국인직접투자액이 크게 감소하였다.

[표1]외환위기 이후 외국인직접투자액 추이

(도착기준, 억달러, %)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1-9
전체	53.2	110.0	102.6	50.6	38.1	51.3	92.6	95.9	75.2 <sup>1)</sup>
	(73.0)	(106.9)	(△6.7)	(△50.7)	(△24.8)	(34.7)	(80.7)	(3.5)	(△2.3 <sup>1)</sup> )
(제조업)	30.7	63.7	59.1	24.9	14.1	16.0	39.6	25.2	33.3 <sup>1)</sup>
(서비스업)	21.0	41.4	41.3	25.5	23.2	32.5	51.8	69.6	41.2 <sup>1)</sup>
도착금액/ 신고금액 (%)	60.0	70.8	67.2	<b>44.8</b>	<b>41.7</b>	79.3	72.4	82.9	89.0 <sup>3)</sup>
도착금액/ 전세계투 자(%)	0.7	0.9	0.6	<b>0.5</b>	<b>0.5</b>	0.7	1.1	0.8	-

주: 1) 신고기준

2) ( )내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3) 2006. 1~6월 실적 기준

자료: 산업자원부(2006),보도자료

관세자유지역과 자유무역지역은 두 지역 모두 외국물품에 대하여 관세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를 면제하는 한편, 각종 신고 절차의 생략 등 세관의 통제를 최소화함으로써 자유로운 물류활동과 제조활동을 보장하는 대표적인 제도이다.

이와 같이 관세자유지역과 자유무역지역이 비관세지역을 그 수단으로 하는 유사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근거 법령 및 소관 부서를 달리하여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외국인투자자의 입장에서 혼란을 초래하여 비효율성을 높일 우려도 있었다.

뿐만 아니라 가공·조립 기능의 부재로 관세자유지역의 경우, 실질적으로 물류업체의 유치가 어렵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제기되었다. 따라서 외국인 투자 유치의 효과를 제고하고, 무역의 진흥 및 국제무역의 원활화, 이역개발의 촉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등에 관한법률』을

개정하여 관세자유지역을 자유무역지역에 통합시켜 일원화하고,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제도를 확대하여 외국인투자환경을 개선하는 내용의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자유무역지역법”이라 한다)이 2004.3.22에 법률 제7210호로 공포되었다.<sup>2)</sup>

이에 따라 그 동안 관세자유지역의 주요 문제점으로 거론되었던 가공·조립기능의 부재와 선개발 후지정 방식으로 인한 개발단계의 지원 미비 문제는 해소되었으나, 비관세지역 관리의 가장 중요한 분야 중 하나인 보세화물관리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부족한 상태에서 성급한 통합이 이루어짐으로써 여전히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통합된 자유무역지역제도의 핵심 내용인 자유무역지역의 지정과 관리, 물품의 반출입 절차 및 세제 지원 등을 중심으로 자유무역지역제도를 제도적, 정책적, 운영 측면에서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향후 한국의 자유무역지역제도의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제2절 연구의 범위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연구의 대상은 한국의 대표적인 비관세지역인 관세자유지역과 자유무역지역, 그리고 두 지역을 통합한 자유무역지역이다. 이를 중심으로 한국의 자유무역지역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확인하기 위하여 제1장에서는 연구의 배경과 목적, 제2장에서는 자유지역의 종류, 자유지역제도의 경제적 효과 그리고 외국의 운영사례의 검토를 통하여 자유지역제도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한다.

제3장에서는 관세자유지역과 자유무역지역이 자유무역지역으로 통합된 배경과 통합된 자유무역지역제도의 내용을 살펴보고, 그 문제점은 무엇인지 분석한다. 제4장에서는 자유무역지역제도의 발전방향과 제 3장에서 살펴본 문제점에 대하여 제도적, 정책적, 운영 측면에서 접근하여 구체적인

---

2) 동 법률은 부칙 제1조(시행일)의 규정에 의하여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동 법률의 시행과 함께 관세자유지역제도는 폐지된다.

문제점의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이를 종합하여 마지막 제5장에서는 요약 및 결론을 제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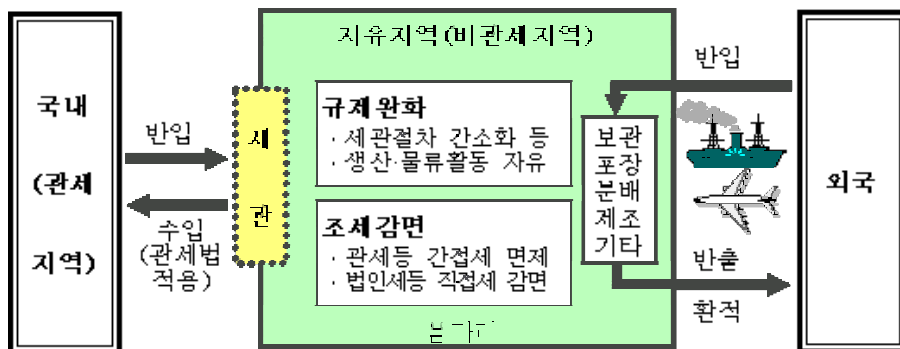
## 제 2 장 자유지역의 일반적 고찰

### 제 1 절 자유지역의 종류

#### 1. 자유지역의 개념

무역에 있어서 자유지역이란 일반적으로 한 국가의 공항만 또는 내륙 지역 등 특정 장소에 일정한 면적의 구획을 정하여 외국의 영역과 유사한 지위를 부여한 지역(비관세지역)으로서, 당해 지역으로 반출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통관 절차, 관세 및 내국세 등의 면제 특전을 부여하고 물품의 반출입 및 중계 등을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는 법적, 지리적 경제활동 특별지구라고 정의된다.<sup>3)</sup> 자유지역은 자유무역지역(Free Trade Zone), 외국무역지역(Foreign Trade Zone), 관세자유지역(Customs Free Zone), 수출가공지역(Export Processing Zone), 자유항(Free Port) 등 다양한 명칭을 가진 유형들로 나누어져 있으나 이들의 기본적인 목적 및 기능은 대체로 유사하다.

[그림1] 자유지역 개념도



자료 : 관세청(2001), 관세자유지역 업무 편람 P.4그림 참조하여 재구성

3) 한국해양수산개발원(1998), p.7.

[표 2] 자유지역의 주요 명칭

명 칭	설치 지역
자유무역지역(Free Trade Zone)	전통적 용어(19세기 이후)
외국무역지역(Foreign Trade Zone)	미국, 인도
자유공업지역(Industrial Free Zone)	아일랜드, 리베리아
자유지역(Free Zone)	아랍에미리트
마킬라도라(Maquiladora)	멕시코
수출자유지역(Export Free Zone)	아일랜드, 한국
관세자유지역(Customs Free Zone)	한국
수출가공지역(Export Processing Zone)	필리핀, 말레이시아, 파키스탄, 대만
경제특구(Special Economic Zone)	중국
투자진흥지역(Investment Promotion Zone)	스리랑카

자료 : ILO/UNCTC, Economic and social effects multinational enterprises in export processing zones, 1998.

## 2. 자유지역의 역사

자유구역(free zone)이나 자유항(free port)은 원래 높은 관세와 복잡한 세관 규제가 교역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없애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다. 자유지역을 자유항을 중심으로 그 역사를 살펴보면, 자유항의 기원은 12세기 말엽부터 거의 4세기 동안 번창했던 북부 독일 항구도시들의 상업연합인 한자동맹(Hanseatic League)이었다. 중세시대에 이탈리아가 독점무역을 풀고 리보르노(Livorno)에 대하여 자유무역에 대한 특권을 부여하였는데, 이것을 자유항의 효시로 본다. 그 후 자유항은 플로렌스가 1547년에 외항인 레그혼(Leghorn)을 자유항으로 선언함으로써 본격화되었고, 점차 나폴리(1633년), 베니스(1661년), 안코나(1732년) 그리고 프랑스의 마르세이유(1669년)로 확장 발전하게 되었다. 함부르크, 뤼벡, 브레멘 등 북유럽의 자



유항은 한자동맹의 도시국가 형태였는데, 19세기에 독일제국에 흡수됨으로써 사라지게 되었다. 그러나 함부르크와 브레멘은 자유항의 정신을 잘 살려 오랫동안 번영해 왔다.

이후 뉴욕, 싱가포르, 홍콩이 대표적인 자유항들로 번영을 누렸다. 영국은 산업혁명 이후 자국의 공업제품을 세계 각국에 수출하기 위해 자유무역체제에 의한 팍스-브리타니카를 확립하고, 19세기 들어 식민지 정책의 일환으로 홍콩(1819년), 싱가포르(1841년) 등에도 자유항을 설치하였다. 미국에서는 1911년 처음으로 자유무역항 설치문제가 제기되었으나, 뉴욕항에 자유항이 설치된 것은 외국무역지대설치법(Foreign Trade Zone Act)이 제정된 1934년이였다. 그 후 1936년에 뉴올리언스, 샌프란시스코 및 시애틀에도 자유무역항이 설치되었다.

영국의 식민지였던 홍콩과 싱가포르를 제외하고, 아시아에서는 1965년에 인도가 맨 먼저 칸드라 지역에 수출촉진지역(Export Processing Zone)을 설치하였다. 그리고 대만이 1966년에 카오슝에 수출자유구를 설치하였고, 한국은 1970년 마산에, 1973년 익산에 수출자유지역(Export Free Zone)을 설치하였다.

### 3. 자유지역의 유형

자유지역 제도는 각국의 역사적 발달 과정과 설치 지역의 입지 조건, 국가의 경제 상황과 설치 목적 및 기능에 따라 다양한 명칭과 기능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자유지역의 분류기준 역시 연구자의 입장에 따라 여러 가지가 존재 한다.

우리나라 연구의 경우 한국해양수산물개발원에서는 자유지역의 성격과 자유도에 따라 자유항도시, 자유항구, 자유무역지역, 자유지구, 수출자유지역 등으로 나누고 주 수행기능에 따라 물류중심형, 생산중심형, 물류·생산 복합형으로 구분하였다.<sup>4)</sup> 또한, 삼성경제연구소에서는 생산 중심형, 국제 교역 중심형, 생산 교역 복합형, 지식 창조형으로 구분하였고,<sup>5)</sup> 국토연구

---

4) 한국해양수산물개발원(1998), pp. 8~12

원에서는 무역·물류형, 제조·가공형, 복합형, 업무형 등 네 가지로 유형을 구분하였다.

이들 연구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모두 자유지역의 기능에 따라 첫째, 생산·제조 등을 주 기능으로 하는 자유지역, 둘째, 물류·국제교역·무역을 주 기능으로 하는 자유지역, 셋째, 생산·물류의 두 가지 기능을 복합적으로 수행하는 자유지역으로 분류한 것이 공통적이다. 이 세 가지 공통적인 유형은 모두 비관세 지역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그 외 지식창조형, 업무형 또는 역외금융센터 등의 자유지역은 비관세지역과는 관련이 없는 경우가 많다. 본 연구의 범위는 비관세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비관세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지식창조형 등의 자유지역은 논외로 하기로 하고, 설치지역의 성격을 분류기준으로 한 자유지역의 종류와 수행기능을 기준으로 분류한 자유지역의 종류와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한다.

## 1) 지역의 성격에 의한 분류

### ① 자유항도시(Free Port City)

자유항 도시는 중세 지중해 자유도시 항구와 같이 정치, 경제적으로 독립된 하나의 도시국가 형태로, 자유항 고유의 기능을 가진 자유무역항(Free Trade Port)를 말한다. 자유항은 항만전체를 자유지역으로 설정하여 선박과 상품에 대하여 자유로운 출입, 저장, 제조가공, 포장, 재포장, 상표부착 등이 허용됨은 물론 고용인의 지역 내 거주와 소비가 허용되는 지역이다.

자유항도시는 항만도시 전체가 비관세지역이므로 관세제도상으로는 외국에 준하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자유항도시 주민과 시외 주민 간에 이해관계의 대립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면세, 밀수 등의 감시가 어려운 단점이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개념의 전통적인 자유항도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정치적인 이유로 대부분 없어졌으며, 오늘날 홍콩이 자유항도시의 유일한 전형으로 남아 있다.

---

5) 삼성경제연구소(2002), pp.6~7

## ② 자유항구(Free Port Quarter · District)

자유항구란 항만 도시 전체가 아닌 항구에 면한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획하여 이것을 관세구역으로 하고, 이 구역 내에 있어서는 출입하는 화물에 대하여 모든 관세를 면제한다. 자유항구는 외국화물의 반출입이 자유롭고 저장, 제조·가공, (재)포장, 상표 부착 등을 비롯한 기타 모든 제조공업에 종사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서 이런 점은 자유항과 똑같은 성질을 가지나 거주를 허용하지 않는 점이 다르다. 자유항구에서는 비과세 화물이나 면세 또는 환급을 받은 화물의 소비 및 계속적 사용도 허용되며, 재수출을 위한 가공업이나 일반 공업도 허용된다.

오늘날 자유항구는 그 개념이 더욱 확대되어 자유무역지역의 개념에 포함되는 추세에 있지만, 명칭은 Free Port, Free Zone 또는 Free Port & Zone 등을 사용한다. 대표적인 자유항구로서 덴마크의 코펜하겐, 독일의 함부르크 등이 있다. 싱가포르의 경우 세계 제2차 대전 이전에만 해도 자유항도시에 속하였으나 현재는 자유항구의 개념을 지닌 자유무역지역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 ③ 자유무역지역(Free Trade Zone)

자유무역지역은 본래 미국의 외국무역지역(Foreign Trade Zone)을 통칭하는 용어로서, 자유무역지역은 앞서 살펴본 유형의 자유항과 유사하나 그 설정지역이 꼭 항구(부두)에 면하지 않고 내륙에도 일정 지역을 지정하여 그 설정 지역을 비관세지역(Duty Free Zone)으로 지정한 곳을 의미한다. 또한 자유항도시 및 자유항구가 선박과 화물의 자유로운 입출항에 따른 중계항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에 중점을 둔 반면 자유무역지역은 중계무역 촉진에 주목적을 두고 있다.

따라서 화물이 이 지역에 머무르는 동안에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고, 외국 화물의 반출입, 이적, 보관, 개장, 혼합, 제조·가공, 포장, 상표 부착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며, 이들 물품의 재수출도 가능하다. 그러나 자유무역 지역에서는 고용인의 거주가 허용되지 않는다. 자유무역지역은 오늘날 중계무역과 재수출 등 국제무역과 상업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되면서 가장 폭넓은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자유무역지역을 설치·운영중인 대표적인 국가는 미국, 싱가포르 및 중국을 등이 있다.

#### ④ 자유지구(Free District)

자유지구란 규모가 매우 작은 특정 항만 지역이나 화물의 장치 혹은 처리만을 위해 비관세로 인정해 주는 좁은 지역을 말한다. 가공무역을 위한 외국물품의 조립, 혼합, 가공, 제조 등이 허용되지 않으며 고용인의 거주도 금지된다. 따라서 내용상으로는 관세법의 규정에 의한 보세창고(Bonded Warehouse)와 같다.

#### ⑤ 수출자유지역(Free Export Zone)

수출자유지역이란 세관의 수속없이 상품을 특정지역 내에 반입할 수 있으며, 그 지역 내에서 자유롭게 상품 처리·가공·제조 등을 할 수 있는 지역을 말한다.

수출자유지역은 외국인 투자수출업체가 입주해 있는 단일보세구역으로서 상공부 수출지원지역관리소가 현지에 주재하여 업체의 생산 및 수출 활동을 지원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수출자유지역은 주로 자본과 기술이 부족한 국가에서 무역의 자유화와 수출산업의 육성, 그리고 외국기업을 직접 또는 합작투자의 형식으로 유치하기 위하여 도입한 제도이다. 이 지역에서는 중계무역을 제외한 상품의 제조·가공·포장·혼합 등 수출에 관련된 기업 활동을 자유롭게 허용하며, 정부에서 관세법 등 조세상의 제한을 면제 혹은 완화해주고 무역센터 등 각종 간접시설을 지원해주고 있다. 대만 카오슝의 수출가공구(Export Processing Zone)이 대표적인 수출자유지역이며, 한국에도 마산, 익산, 군산 및 대불에 자유무역지역이 설치되어 있는

데 이것이 수출자유지역의 형태를 띠고 있다.

## 2) 수행기능에 따른 분류

자유지역은 당해 지역이 주로 수행하는 기능에 따라 물류중심형, 생산중심형, 복합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또는 상업용, 산업용 자유지역으로 구분하기도 하는데 상업용은 물류중심형, 산업용 자유지역은 생산중심형에 해당된다.

### ① 물류 중심형 자유지역

지정학적으로 유리한 입지조건을 갖춘 지역에 대해, 지리적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국제물류(物流, Physical Distribution)의 유치 · 촉진을 위한 목적으로 설치 및 운영되는 자유지역을 말한다. 홍콩, 싱가포르, 독일의 함부르크, 네덜란드의 로테르담 등이 대표적인 물류중심형 자유지역으로 구분된다.

### ② 생산 중심형 자유지역

개발도상국에서 주로 설치 · 운영하는 자유지역으로 외국인투자의 유치, 수출입 무역의 활성화, 첨단과학기술의 도입 등을 목적으로 설치한다. 국가마다 다양한 형태와 명칭을 가지고 있는데 대만의 수출가공구, 중국의 경제특구, 멕시코의 마길라도라(Maquiladora) 등이 대표적인 생산중심형 자유지역이다.

### ③ 복합형 자유지역

물류와 생산기능이 복합된 자유지역으로, 국내기업의 해외 이탈을 방지하고 자국내에서의 기업 활동을 촉진하여 고용창출과 국제무역 활성화

를 목적으로 한다. 미국의 외국무역지역, 중국의 푸둥 경제특구 등이 대표적이다.

#### ④ 상업용(Commercial) 및 산업용(Industrial)자유지역

상업용 자유지역은 보통 물품에 대한 제조 또는 가공작업이 허용되지 않고 물품의 현상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물품의 유지 및 보수작업, 포장개선작업 등이 허용되는 자유지역을 말한다. 산업용 자유지역은 제조 및 가공작업이 주로 수행되는 자유지역을 말한다.

세계 주요국의 자유지역은 대체로 공항만 지역 또는 공항만의 인접지역으로서 철도·도로·공항 및 해운과의 연계 수송망이 발달된 곳에 위치하고 있다. 이러한 입지는 국제물류 유통 및 수출입 무역을 유치하는데 유리하므로, 대체적으로 복합적인 기능을 수행한다.

즉, 단순한 화물의 중계기능 외에도 제조·조립·가공·혼합 등의 생산기능과, 하역·환적·보관·저장·분류·혼재 및 배송 등의 물류기능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판매·전시·무역·금융·운송주선 등 거래를 촉진하는 기능을 함께 수행하고 있다. 결국 현재의 자유지역은 그 기능과 역할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 할 수 있겠다.

## 제 2 절 자유지역의 경제적효과

자유지역의 기능과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 해외상품의 대량 집산·및 수출입이 가능하여 국제상품시장의 형성이 가능해지고 배후권역의 화물유통 산업이 활성화되고 있다. 뿐만아니라 직간접적 고용창출은 물론 수출경쟁력 증대, 잠재적 기술이전, 해외자본투자의 증대, 중계무역과 환적항 기능의 증대 등으로 금융보험과 해운산업의 발전도 가능하다. 이와 같은 경제적 효과를 무역업에 대한 효과, 제조업계에 대한 효과, 해운항만에 대한 효과의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1) 무역업에 대한 효과

국제무역의 장애물이 제거된 자유항에서는 거래절차를 간소화하여 비용을 절감하면서 무역을 수행할 수 있고 상품거래가 성립되거나 국내외 시장의 판매조건이 좋아질 때까지 자유항에 보관하는 동안에도 자본을 회전시킬 수 있다.

그리고 중소기업자가 직접 원산지까지 가지 않아도 자유항 내에 설치된 견본전시장에서 상품에 대한 사전조사를 할 수 있고, 국내 판매조건이 개선되었을 때 수량에 관계없이 원산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하여 배후 소비지에 공급할 수 있으므로 국내소비자물가의 안정에도 기여하는 효과를 갖는다.

## 2) 제조업계에 대한 효과

자유지역에 각국의 상품이 모이게 되므로 국내 제조업계는 필요에 따라 우수한 원자재를 골라서 싸게 구입할 수 있다. 때문에 생산원가가 절감되며, 특히 한국과 같이 제조원자재의 대부분을 해외로부터 수입해 오는 국가에 있어서는 수출가공무역을 더욱 촉진시킬 수 있게 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3) 해운항만에 대한 효과

자유항에 입출항하는 선박과 화물에 대한 관세와 통관 절차의 면제로 자유로이 화물의 양륙 선적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게 되므로 선박의 재항일 수 단축 등해운항만 업무를 원활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

# 제 3 절 자유무역지역과 관세자유지역의 비교

이 절에서는 통합 전의 자유무역지역제도와 관세자유지역의 주요 내용을 양 제도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간단히 비교해보도록 한다.

## 1. 도입목적 및 지정 지역의 성격

### 1) 도입목적

관세자유지역은 1999년에 제정·공포된 『국제물류기지육성을위한관세자유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이하 “관세자유지역법”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관세자유지역의 도입목적은 그 근거 법률의 명칭뿐만 아니라, 동법 제1조(목적)의 규정<sup>6)</sup>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을 국제물류의 중심지로 육성하는 것이다.

이와는 달리 자유무역지역은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1967~1971년) 기간 중 해외자본의 유치와 선진 기술의 도입 및 수출 진흥 등을 목적으로 설치된 수출자유지역을 확대·개편한 제도이다. 수출자유지역 설치 당시에는 ‘외국인투자를 유치함으로써 수출의 진흥, 고용의 증대 및 기술향상을 기하여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하였으나, 수출자유지역을 자유무역지역으로 확대 개편하면서 설치 목적도 ‘자유로운 제조 및 무역활동 등이 보장되는 자유무역지역을 지정·운영함으로써 외국인투자의 유치, 국제무역의 진흥 및 지역개발 등을 촉진하여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바꾸어 설정하였다.

### 2) 설정지역의 성격

관세자유지역이나 자유무역지역은 한 나라의 국경선 안에 위치하는 지리적 성격을 갖고 있지만, 일정한 범위 내에서 관세관련 법률의 적용이 배제

---

6) 이 법은 공항·항만 등을 중심으로 하는 일정지역을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운영하여 국가 간의 물류를 원활하게 함으로써 당해 지역을 국제적인 물류중심지로 육성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국제물류기지육성을위한관세자유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제1조)



되는 관세선의 바깥에 위치한 비관세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관세자유지역은 당해 지역에서의 물품의 반입·반출 및 용역의 제공 등에 대하여 관세법·부가가치세법 특별소비세법 및 주세법 등 세법에 대한 특례가 인정되는 지역으로 관세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며,<sup>7)</sup> 관세를 납부하지 않고 외국물품을 사용·소비할 수 있다. 그리고 국내에서 관세자유지역으로 반입되는 내국물품은 수출하는 물품으로 간주되고, 관세자유지역에서 등록업체 간에 공급되는 물품 및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의 영세율이 적용된다. 따라서 관세자유지역은 관세법에 대한 특례가 인정되는 지역으로서, 관세법상 외국과 유사한 비관세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비하여 자유무역지역은 대외무역법·관세법 등 관계 법률에 의한 규제가 완화되는 지역으로, 관세법의 적용이 배제되고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자유로이 제조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는 점에서는 비관세지역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그러나 국내에서 자유무역지역으로 반입되는 내국물품을 수출하는 물품으로 간주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유무역지역에서 입주업체간의 물품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의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자유무역지역은 관세자유지역에 비하여 비관세지역으로서의 성격이 약하며, 관세법상 보세구역에 가까운 비관세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 2. 지정 요건, 절차 및 지정 현황

### 1) 지정 요건

일반적으로 국제물류의 중심지는 간선항로에 위치하고 있는 공항이나 항만 또는 그 주변, 배후지역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관세자유지역과 자유무역지역은 공항만을 공통적으로 그 지정대상지역으로 하고 있다. 즉 관세자유지역은 공항 및 배후지, 항만 및 배후지, 유통단지, 화물터미널을 대상지

---

7) 국제물류기지육성을 위한 관세자유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법률 제2조(정의)제1호 및 제3조 관세법과의 관계)

역으로 하고 있고, 자유무역지역은 공항의 주변지역, 항만의 주변지역, 산업단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대상지역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관세자유지역이 직접 공항·항만과 그 배후지를 지정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비하여, 자유무역지역은 공항이나 항만의 주변지역을 지정대상으로 하고 있다는데 그 차이점이 있다. 이는 관세자유지역과 자유무역지역이 서로 중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sup>8)</sup>

관세자유지역은 향후 국제물류 중심기지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선정하여 중점적으로 육성한다는 선택과 집중전략에 따라 일정 수준 이상의 시설 및 화물 반출입 실적,<sup>9)</sup> 면적,<sup>10)</sup> 연계 교통 시설,<sup>11)</sup> 통제시설<sup>12)</sup> 등을 구비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반면, 자유무역지역의 경우에는 관세자유지역에 비하여 지정요건이 단순하다. 즉 제조·물류시설의 설치를 위한 충분한 부지의 확보가 가능하고,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거나 확보될 수 있으면 지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 2) 지정 절차

### ①심의 및 지정

- 
- 8) 자유무역지역의 지정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에서는 '자유무역지역의 인근지역으로서 물류 기능의 보완을 위하여 필요하고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항만 및 그 배후지와 물류 단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9) 공항의 경우 정기국제항로가 개설되어 있고 연간 50만톤 이상의 화물을 처리할 수 있어야 하며, 항만의 경우에는 정기국제컨테이너선박항로가 개설되어 있고 연간 1천만톤 이상의 화물을 처리할 수 있으며 3만톤급 이상의 컨테이너선박용 전용부두가 있어야 하고, 유통단지나 화물터미널의 경우에는 연간 1천만톤 이상의 화물을 처리할 수 있고 반입물량의 100분의 50 이상이 외국으로부터 반입되며 외국으로부터 반입된 물량의 100분의 20 이상이 국외로 반출되거나 반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곳이어야 한다.(관세자유지역법시행령 제4조제1항)
  - 10) 공항의 경우 화물터미널 등 항공화물의 보관·전시·분류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의 면적과 그 배후지의 면적을 합하여 50만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고, 항만의 경우에는 항만법 상의 육상 구역의 면적과 그 배후지의 면적을 합하여 100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유통단지나 화물터미널의 경우에는 50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관세자유지역법시행령 제4조제3항)
  - 11)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과 주요 간선도로를 연결하는 도로로서, 왕복 4차로(철도가 있는 경우에는 왕복 2차로) 이상인 포장도로로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관세자유지역법시행령 제4조제4항)
  - 12) 물품의 반입·반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담장·출입문·경비초소 기타 외국물품의 불법유출 및 도난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과 반입물품 및 반출물품을 검사하기 위한 검사장 및 검사설비를 말한다.(관세자유지역법시행령 제4조제5항)

관세자유지역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의 요청에 의하여 재정경제부 장관이 관세자유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재정경제부 장관은 그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6월 이내에 관세자유지역의 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재정경제부 장관이 관세자유지역을 지정한 때에는 당해 지역의 위치·경계·면적 등을 관보에 고시하고, 그 내용을 지체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자유무역지역의 지정절차는 지정권자와 심의위원회가 산업자원부장관과 자유무역지역위원회이라는 것을 제외하면 관세자유지역과 거의 동일하다. 다만, 관세자유지역은 반드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의 요청이 있어야만 지정할 수 있는데 비하여, 자유무역지역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의 요청 없이 산업자원부장관에 의한 지정이 가능하다.

## ② 예정지역의 지정

관세자유지역의 예정지역 지정은 지정대상지역의 개발 및 물류업체의 유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향후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이다. 관세자유지역의 예정지역은 기존 관세자유지역과는 별도로 독립된 지역을 지정할 수 있고, 그 지정절차는 관세자유지역의 지정절차와 동일하다. 예정지역의 지정기간은 3년 이내이나, 개발계획의 변경 등으로 지정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3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반면에 자유무역지역의 예정지는 자유무역지역과 인접한 지역에 대하여 지정한다. 산업자원부장관은 지정요청이나 자유무역지역위원회의 심의 없이 예정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예정지로 지정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예정지의 지정은 해제되며 예외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와 같이 관세자유지역과 자유무역지역의 예정지역의 지정절차가 서로 상이한 것은, 관세자유지역의 경우 충분한 물류시설과 외국물품의 불법 반

출입을 차단할 수 있는 통제시설의 구비를 지정요건으로 하는 선개발 후 지정 방식인데 비하여, 자유무역지역의 경우 기본적으로 선지정 후개발의 방식을 택하고 있기 때문이다.<sup>13)</sup>

### 3) 지정현황

통합 전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부산·광양·인천항 및 인천공항으로 우리나라의 주요 공항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부산항과 광양항은 지난 2002년부터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되어 운영중이며, 인천항은 2003년에 지정되어 운영을 개시했다. 인천국제공항의 경우 2002년 예정지역으로 지정되어 2005년부터 운영을 개시했다.

[표 3] 관세자유지역 지정현황

관세자유지역	지정지역 및 면적	지정일자
부산항	○ 신선대부두, 한진감천부두 일원 1,300천㎡ ○ 용당 부지, 선기조합 부지 등 867천㎡	'02.1.1
광양항	○ 광양항 1단계 및 2단계 1차부두 1,440천㎡ ○ 공항만관련 부지 및 2단계 2차부두 955천㎡	'02.1.1
인천국제공항	○ 제5 활주로 예정지역 동편 992천㎡	'02.2.1
인천항	○ 인천내항(1~8부두) 1,712천㎡ ○ 4부두 배후지 및 삼성-PSA부두 584천㎡	'03.1.1

자유무역지역은 현재 마산·익산·군산 및 대불 등 4곳이 지정되어 있으

13) 지정요청시 관세자유지역은 주로 지정요건의 충족여부를 입증하는 현황자료를 제출하고, 자유무역지역은 개발계획과 관련한 자료를 주로 제출한다.(관세자유지역법시행령 제3조 및 자유무역지역법시행령 제2조 참조)

나 대불은 현재 개발이 진행중이다.

[표 4] 자유무역지역 지정 및 운영현황

구 분	마산	익산	군산	대불
지정일	1970.1.1	1973.10.8	2000.10.6	2002.11.21
위치	경남 마산시 봉암동 일원	전북 익산시 영등동 일원	전북 군산시 오식도동 군장산업단지	전남 영암군 삼호면 대불산업단지
면적	1,095,506㎡	309,544㎡	1,254,329㎡	1,157,845㎡

### 3. 입주절차 및 입주업체에 대한 혜택

#### 1) 입주업종

현재 전 세계에는 70여개 국가에 약850여개의 자유지역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sup>14)</sup> 각각의 자유지역은 그 설치 목적과 수행 기능에 따라 입주업종을 달리하고 있다. 국제물류기지 육성을 위한 관세자유지역에는 등록사업<sup>15)</sup>을 영위하고자 하는 등록업체, 지원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지원업체,<sup>16)</sup> 그리고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이 입주할 수 있다.

자유무역지역에는 제조업,<sup>17)</sup> 물류업,<sup>18)</sup> 수출입 거래를 주목적으로 하는

14) 이창재(2003), p.122

15) 등록사업이란 ①물품의 하역·운송·보관·전시·판매 또는 가공(재정경제부장관이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단순가공에 한한다), ②물품의 보수(세정·해체·절단·수선 기타 이와 유사한 작업으로서 제조·가공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③국제운송주선, 국제선박거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제물류관련사업(선박 또는 항공기의 수리·정비 및 조립업, 연료·식수·기내식 등 선(기)용품의 공급업)을 말한다.(관세자유지역법 제2조제4호)

16) 지원업체라 함은 금융, 통관, 폐기물 수집·처리 등 등록업체의 지원과 관세자유지역 운영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관세자유지역법 제2조제5호)

17) 제조업종은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제한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종(자유무역지역의 지정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제1항)으로서 수출을 주목적으로

도매업, 입주기업체의 사업을 지원하는 업체가 입주할 수 있다. 이들 입주 업체는 원칙적으로 외국인투자기업이어야 한다. 그러나 산업자원부장관이 무역의 촉진, 물류의 처리, 입주기업체의 사업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외국인투자기업이 아닌 기업체에 대하여도 자유무역지역 안에 입주하게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관세자유지역과 자유무역지역은 입주업종에 대한 차이가 있다. 그리고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는 업체는 기본적으로 외국인투자기업이어야 한다는 제한이 있으나, 관세자유지역은 투자기업의 국적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 2) 입주절차

관세자유지역법에는 입주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고, 등록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세관에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관세자유지역에서 업체의 입주여부는 관리권자가 다른 법률에 근거하여 결정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이다. 세관은 등록절차를 통하여 등록사업을 하고자 하는 업체의 실제 입주여부를 확인하고, 업체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한다.

세관등록은 등록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만이 할 수 있다.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미리 관리권자와 입주계약이 체결되어 있어야 하고, 결격사유<sup>19)</sup>

---

하여야 한다.

- 18) 물류업종은 창고·운송·하역·포장·전시·판매·보수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물류업종을 말한다.(자유무역지역의지정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제2항)
- 19) 관세자유지역법 제11조제3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과 같다.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이 법 또는 관세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다만, 형의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된 자는 예외로 한다.
  5. 제36조 내지 제38조, 제41조, 제44조, 관세법 제269조 내지 제271조 또는 제274조의 규정에 의하여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다만, 제47조, 관세법 제279조 또는 제280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된 본인·법인 또는 개인을 제외한다.
  6.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관세 또는 내국세를 체납한 자

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반면 지원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세관에 등록할 필요없이 관리권자와 입주계약을 체결한 후 바로 사업을 개시할 수 있다. 단, 관세자유지역법에서 규정하는 각종 혜택은 부여되지 않는다.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산업자원부장관(실제로는 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의 입주허가를 받아야 한다. 입주허가는 자유무역지역의 관리권자인 산업자원부장관이 입주하고자 하는 기업이 입주업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입주를 허용하는 것이다. 입주허가를 받은 업체는 세관에 별도의 등록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으나, 산업자원부장관은 입주허가의 내용을 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3) 입주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 ① 세제상의 혜택

관세자유지역에 입주하여 세관등록을 마친 물류업체나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한 제조업체등<sup>20)</sup>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 세제혜택이 부여된다.

첫째, 외국물품을 관세 등<sup>21)</sup>이 면제된 상태로 사용·소비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외국물품에 대하여 관세 등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관세자유지역에서는 식음료품 등 특정한 물품인 경우에 관세 등을 납부하여야 하고,<sup>22)</sup> 자유무역지역에서는 기계 설비 등 특정한 물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관세 등이 면제된다.<sup>23)</sup> 여기서 관세 등의 면제범위를 규정하는 방식이 관

20) 제조업체, 물류업체, 수출입 거래를 주목적으로 하는 도매업체를 말한다.

21) 관세 등이라 함은 수입물품에 대하여 부과되는 관세, 특별소비세, 주세, 교통세, 농어촌특별세, 교육세 및 부가가치세를 말한다.

22) 관세자유지역에서는 ①식음료품·담배·유류(진기를 포함한다)·주류 등 소비재와 후생복리용품, ②사무용컴퓨터를 제외한 사무용비품 및 소모품, ③관세자유지역과 관세영역에서 겸용하고자 하는 물품과 동 부분품은 관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23) 자유무역지역에서는 ①기계·기구·설비 및 장비와 그 부분품, ②원재료·유회유·사무용컴퓨터 및 건축자재, ③그 밖에 사업목적의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만 관세가 면제된다.

세자유지역은 Negative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자유무역지역은 Positive방식을 채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론상으로는 관세자유지역이 관세 등의 면제범위가 넓고, 관세면제범위를 규정하는 방식도 자유지역 본래의 취지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관세자유지역에서는 등록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반입신고를 하고 국내에서 반입하는 내국물품은 수출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세 등을 면제하거나 환급한다.<sup>24)</sup> 반면 자유무역지역에서는 국내에서 반입하는 내국물품에 대하여 세금을 면제하거나 환급하는 규정이 없다. 다만,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의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유무역지역안의 입주기업체에 공급하는 때에는 수출용원재료<sup>25)</sup>에 대하여만 관세 등의 환급이 가능할 뿐이다.

셋째, 관세자유지역에서는 반입신고를 한 내국물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하는 재화로 보아 부가가치세의 영세율을 적용한다. 그리고 관세자유지역 안에서 등록업체 간에 공급하거나 제공하는 외국물품등과 용역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의 영세율을 적용한다. 그러나 자유무역지역에서는 이러한 부가가치세의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위와 같은 간접세 면제 혜택 이외에도 관세자유지역이나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한 투자금액이 3천만 불 이상인 외국인투자기업<sup>26)</sup>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 · 소득세 · 취득세 · 등록세 ·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sup>27)</sup>

24) 국내에서 반입하는 내국물품은 주세법, 특별소비세법, 또는 교통세법 등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하거나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 또는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관세 · 임시수입부가세 · 주세 · 특별소비세 · 교통세 · 농어촌특별세 및 교육세를 면제하거나 환급한다.(관세자유지역법 제30조)

25) 수출용원자재라 함은 수출하는 물품을 제조 · 가공 · 조립하는데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원재료 및 부재료를 말한다.

26) 외국인투자라 함은 외국인이 대한민국법인 또는 국민이 영위하는 기업의 경영활동에 참여하는 등 당해 법인 또는 기업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당해 법인이나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거나 외국인투자기업의 해외 모기업 및 그 모기업과 자본출자 관계가 있는 기업이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에 5년 이상의 차관을 대부하는 것을 말한다.(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가목 및 나목)

27) ①법인세 및 소득세의 경우에는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7년까지 총 과세표준 중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 전액, 그 다음 3년은 감면대상세액의 50%를 감면한다.

②취득세, 등록세, 재산세의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당해 재산에 대한 세액



## ② 임대료 감면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국유재산의 관리청은 법인세 등을 감면받는 등록업체에게 국가소유의 토지·공장 기타의 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최대 50년간 임대료를 100%까지 감면할 수 있다. 자유무역지역의 경우에도 입주기업체는 10년간 임대료의 100%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다.

## ③ 영업 활동의 자유 보장

관세자유지역이나 자유무역지역에서는 영업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지역 안에서 행해지는 모든 영업활동에 대한 세관신고절차가 생략된다. 그리고 입주업체는 반입화물에 대한 재고관리를 자율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세관은 내부감사체제<sup>28)</sup>의 수준에 따라 입주업체에 대한 물품검사 및 재고조사 등을 함에 있어 차등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입주업체의 영업활동을 보장하는 방식에 있어 관세자유지역은 세관신고나 허가·승인 등이 필요한 의무사항만을 규정하고,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신고의무가 없다는 법률적 해석을 하는 소극적인 방식을 택하고 있다. 그러나 자유무역지역은 입주기업체의 영업활동의 자유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적극적인 방법을 택하고 있다.<sup>29)</sup>

## 4. 물품 반출입 절차 및 관리

중 외국인투자비용을 곱한 금액의 전액, 그 다음 3년은 감면대상세액의 50%를 감면한다.

③종합토지세는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 동안은 당해 재산의 과세표준중 외국인투자비용을 곱한 금액, 그 다음 3년은 공제대상금액 중 50%를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 28) 내부감사체제란 당해 업체에서 물품의 반입·반출 및 재고관리와 관련한 업무의 분담, 분담업무에 대한 권한과 책임의 정도, 업무의 적정성 확인을 위한 일상적 조치사항·확인주기 및 발견된 오류의 신속한 정정 등 물품관리업무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업체 내부의 경영조직 및 업무수행방식을 말한다.(관세자유지역고시 제6조제2항)
- 29)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세관장은 이 법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주기업체의 제조·물류·무역 기타 자유무역지역 안에서 이루어지는 영업활동 및 물품이동에 대하여 신고 또는 허가 등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되며, 자유무역지역 안에서 영업활동이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자유무역지역의지정등에관한법률 제19조)

## 1) 물품 반출입 절차

### ① 외국에서 반입

환적물품을 제외한 외국물품을 관세자유지역이나 자유무역지역으로 반입하고자 하는 자는 세관장에게 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반입신고는 세관화물정보시스템<sup>30)</sup>에 전자문서로 House B/L단위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하선장소에 컨테이너 상태로 반입하는 경우에는 Master B/L단위로도 반입신고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자유무역지역의 반입신고는 실무적으로 수입통관시스템에 수입신고서식을 사용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자유무역지역에서는 관세자유지역과는 달리 Master B/L단위로 반입신고가 불가능하다.<sup>31)</sup>

### ② 국내에서 반입

입주업체는 내국물품을 관세자유지역이나 자유무역지역으로 자유로이 반입할 수 있다. 그러나 내국물품을 조기환급<sup>32)</sup>을 받기 위하여 국외반출목적으로 관세자유지역으로 반입하거나, 등록사업에 사용·소비하기 위해 관세자유지역으로 반입하는 경우에는 관세환급시스템에 전자문서로 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반입신고를 한 내국물품은 수출하는 물품으로 간주하여 관세 등을 환급받거나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 ③ 외국으로 반출

---

30) 세관화물정보시스템이란 외국화물이 우리나라에 도착할 때부터 수입신고가 수리되어 보세구역에서 반출될 때까지 화물의 이동 단계별로 처리현황을 관리하는 세관의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31) 수입신고는 화주별로 신고하도록 되어 있어 여러 화주의 화물을 집하하여 작성한 Master B/L단위로 신고가 불가능하다.

32) 관세등의 환급은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선적이 완료된 후 가능하며, 수출신고가 수리된 후 1월이내에 선적하여야 한다. 그러나 관세자유지역에서는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을 반입한 후 즉시 환급신청이 가능하므로 다른 지역에 비하여 1개월의 조기환급이 가능하다.

관세자유지역이나 자유무역지역에서 외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고자 할 때에는 국외반출신고를 하여야 한다. 국외반출신고는 현행 반송신고절차와 동일하게 수출통관시스템에 전자문서로 신고하여야 한다.

그리고 관세자유지역이나 자유무역지역에 반입한 내국물품(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을 포함)을 외국으로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현행 수출신고절차와 동일하게 수출통관시스템에 전자문서로 신고하여야 한다.

#### ④ 국내로 반출

관세자유지역이나 자유무역지역은 관세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비관세지역으로서 외국의 성격을 갖는다. 따라서 두 지역에 반입된 물품은 내국물품이라고 하더라도 외국물품의 지위를 가지게 되며, 외국물품을 관세영역인 국내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그런데 관세자유지역이나 자유무역지역 안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한 후 원상태로 다시 관세영역으로 반출할 예정인 내국물품의 경우에는 반입한 후에도 계속 내국물품의 지위를 유지하는 것이 편리하다. 내국물품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여야 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국내로 반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관세자유지역이나 자유무역지역에 반입한 내국물품을 관세의 납부 없이 국내로 다시 반출하기 위해서는 동 물품이 내국물품임을 증명하는 확인서를 해당 물품을 국내로 반출하기 전까지 세관에 신청하여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외국물품을 관세자유지역이나 자유무역지역을 경유하여 국내로 반입하고자 하거나, 동 지역에서 제조·가공·보수 등을 한 물품을 국내로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별로 관세자유지역법이나 자유무역지역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고하거나 세관장의 승인·허가 등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sup>33)</sup>

33) ① 국내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관세법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관세자유지역과 다른 관세자유지역, 자유무역지역과 다른 자유무역지역, 관세자유지역이나 자

## 2) 화물관리

### ① 물품의 폐기·멸실 및 분실

관세자유지역이나 자유무역지역에서는 물품의 이동이나 양도, 사용·소비 및 보수작업 등에 대한 세관신고가 불필요하다. 그러나 사후에 추적이 곤란한 외국물품의 폐기·멸실 또는 분실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멸실 또는 분실신고를 할 때에는 멸실 또는 분실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폐기신고를 한 경우에는 폐기결과보고를 하여야 한다.

세관장은 관세자유지역 안에 반입된 물품 중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을 해할 우려가 있거나 부패 또는 변질되거나 유효기간이 경과한 물품 등에 대하여 화주 및 반입자와 그 위임을 받은 자에게 국외반출 또는 폐기를 명할 수 있다. 또한 화주 등에게 미리 통보한 후 직접 폐기처분할 수 있다. 그리고 세관장은 재고조사를 한 결과 외국물품등의 재고가 부족한 경우에는 당해 업체로부터 그에 해당하는 관세를 즉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분실신고를 한 물품이 관세자유지역이나 자유무역지역 내에 있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 ② 자유지역 외곽의 관리

관세자유지역이나 자유무역지역에서는 입주업체의 영업활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대신, 외국물품등의 불법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엄격한

---

유무역지역 또는 관세법상 보세구역 간에 보세운송을 하고자 할 때에는 관세법의 규정에 의한 보세운송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관세자유지역에 반입된 물품을 국내에서 가공·보수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역외작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역외작업의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역외작업으로 반출할 수 있는 물품은 원재료 및 전용 시설체에 한한다.

④ 외국물품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내로 일시 반출하였다가 반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세관장의 허가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

관리를 하고 있다. 국내의 다른 지역과 격리될 수 있도록 통제시설을 설치하고, 물품검사를 실시하며, 출입자 및 출입차량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한다.

두 지역에 대한 세관관리는 기본적으로 세관직원이 두 지역의 출입문에 상주하는 고정감시를 전제로 하고 있으나, 관세자유지역은 단순히 하역·보관기능만을 수행하고 있어 기동감시방식에 의하여 관리를 하고 있다.

## 5. 관세자유지역과 자유무역지역의 차이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관세자유지역과 자유무역지역은 각각 물류 및 제조를 중심으로 역할 분담을 할 수 있는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두 지역의 중요한 차이점을 알기 쉽도록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점은 기본적으로 비관세지역이라는 공통점 위에서 생기는 것이므로,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본질적으로 두 지역은 거의 유사하다고 하여도 무방하다.

[표 5] 관세자유지역과 자유무역지역의 차이점

구분	관세자유지역	자유무역지역
법적근거	국제물류기지육성을위한관세자유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자유무역지역지정등에관한법률
도입목적	국제물류기지의 육성	외자유치,수출촉진,지역개발
성격	관세법 등의 규제가 완화되는 구역으로 보세구역에 가까운 비관세지역	관세법에 대한 특례가 인정되는 지역으로 외국과 유사한 비관세지역
지정절차	관세자유지역위원회심의 재경부장관지정	자유무역지역위원회 심의산자부장관지정
지정대상	공항·항만 및 배후지 유통단지, 화물터미널	산업단지 공항·항만 주변지역
지정요건	1. 일정면적 이상 - 항만(100만㎡), 공항(50만㎡) 2. 일정규모 이상 화물처리능력(연간) - 항만(1천만톤), 공항(50만톤) 3. 연계교통시설 및 통제시설 구비	1. 부지·도로 등 충분한 SOC 시설 확보 가능 2.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
직권지정	시·도지사의 지정요청에 의해 서만 지정	시·도지사의 지정요청 및 직권에 의하여 지정
예정지지정	독립적으로 지정 관세자유지역위원회 심의 필요	인접지역에 부수적으로 지정 자유무역지역위원회심의 불필요
지원업종	물류업	제조업, 물류업, 수출입목적 도매업
자격제한	제한없음	외국인 투자에 한함
관세면제 물품	식음료품·담배·유류·주류 등 소비재와 후생복지용품, 사무용 컴퓨터를 제외한 사무용품 및 소모품 등을 제외한 모든 물품 (Negative방식으로 규정)	기계·기구·설비 및 장비와 부분품, 원재료·운할유·사무용 컴퓨터 및 건축자재 등 (Positive방식으로 규정)

## 제 4 절 외국의 운영사례

앞 절에서는 전 세계에서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자유지역들을 수행기능에 따라 물류 중심형, 생산중심형, 복합형으로 구분하여 그 내용을 살펴보고, 대표적인 제도인 관세자유지역과 자유무역지역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보았다. 이 절에서는 유형별로 대표적인 운영사례를 검토해 보고, 각국의 제도들이 시사하는 바를 알아보고자 한다.

### 1. 물류중심형 자유지역(1) - 홍콩 자유항

#### 1) 개요

홍콩은 1830년~1840년 아편전쟁 이후 난징 조약을 통해 영국에 귀속될 때 부터 자유항으로 지정되었으며, 1972년 최초로 카이충항에 컨테이너 터미널을 건설하여 운영하였다. 이로써 홍콩은 중세 지중해의 자유도시항구와 같이 경제적으로 독립된 하나의 항만 도시국가 형태를 취하면서 항만 및 인접하는 모든 지역을 비관세 지역으로 지정하여 화물의 장치, 가공 체조는 물론 재인의 거주와 소비까지 광범위하게 허용하는 유일하게 남아있는 전통적인 자유항이다. 홍콩은 싱가포르와 함께 지정학적으로 기간 항로상 유리한 위치에 있고, 국제금융, 무역과 정보통신, 물류 산업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홍콩은 낮은 세율과 외화송금의 자유는 물론, 세계 선박항의 6%에 가까운 선대를 유지하고, 중국으로 들어가는 관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1997년에 중국에 반환된 이후에도 완전 개방된 자유시장에 기초하여 무역이나 투자에 대한 장벽이 거의 없는<sup>34)</sup>

---

34) 홍콩에서도 일부품목은 예외적으로 세관통제 및 무역관리 대상이 된다. 주류, 담배, 연료유, 메틸알콜은 과세물품으로서 세관의 사전 수출입승인(Licence)이 필요하고, 통관과정에서 세관의 엄격한 통제를 받는다. 그리고 섬유, 전락물자(핵장비, 첨단기술제품 등), 의약품, 곡물, 냉동육류, 방사성 물질, 오존파괴물질 등은 무역관리품목으로 지정되어 상무부(Trade Department)의 사전 수출입승인이 필요하고, 마약, 무기, 화학약품 및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생물보호조약(CITES) 대상물품은 금지품목으로서 해당기관의 사전 수출입승인 및 수입허가가 필요하다.

경제자유도가 가장 높은 곳으로, 외환규제나 사업체 소유권에 대한 국제적 한도 없다. 홍콩은 세계에서 가장 세금이 낮은 나라 중 하나로 국내 기업과 외국인 기업 모두에게 16%의 법인세가 부과되고 소득세는 15%에 불과하다. 또한 부가가치세 및 자본이득세가 없다. 뿐만 아니라 천혜의 항만, 효율적인 인프라를 갖추고 발달된 창고시설과 금융·보험·무역 분야의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활용하고 있다. 중소수출입 업체 등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제도적 지원도 홍콩자유항의 강점이다.

## 2) 운영 현황

홍콩은 세계 유일의 전통적인 자유항으로서 자유방임적 경제 정책과 모든 물품에 대해 자유로운 반출입을 허용함으로써,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자유지역 운영국가로 꼽히고 있다. 홍콩은 세계 제1위의 컨테이너 처리 항만으로 민간에 의해 관리·운영되고 있으며, 동북아·동남아·중국을 잇는 관문의 구심적 위치를 최대한 활용하여, 국제중계무역센터, 국제금융센터, 국제정보통신·물류센터 등 산업·무역·물류를 망라한 종합서비스센터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비행시간 5시간 거리에 세계 인구 절반이 살고 있는 지리적 여건을 활용하여 항공 교통의 요지라는 위상도 확보하였다. 주당 3,000대 이상의 비행기가 120개 도시, 40여개 나라로 출항하며, 첵랍콕 공항의 완공으로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항공화물처리능력을 보유하게 되었다.

홍콩은 서양이 중국과 아시아로 진출하는 교두보 역할을 해 왔고, 영국의 식민지였던 관계로 서양 문화에 대한 배타적 감정이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하다. 이것이 홍콩에 40여개의 외국인 학교가 존재하는 이유다.

이와 같은 홍콩의 기업 친화적 제도와 지리적 여건 및 문화적 포용성은 홍콩을 동북아 지역의 비즈니스 중심지로 만들었다. 그 결과 홍콩에는 2002년 6월 현재 3,119개(지역총괄본부 948개, 지역사무소 2,171개)의 지역 본부가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sup>35)</sup>



### 3) 성공요인 및 시사점

홍콩은 유럽-아시아 항로의 관문 역할을 수행하기에 알맞은 지정학적 위치를 최대한 활용하여 해운산업 및 다국적 기업의 물류 거점으로 활용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 이에 일찍부터 낮고 단순한 세율, 자유로운 정보의 흐름, 정치적 안정성, 부채지수가 낮은 정부, 통신 및 교통 등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었기 때문에 다수의 지역 운영 본부를 유치할 수 있었다. 또한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컨테이너 부두와 항만, 공항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개발을 추진하여 배치된 물류시설은 강력한 상호 시너지효과를 창출하여 홍콩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어 홍콩항의 국제 물류 거점화를 주도 하고 있다.

지난 160여 년간 자유항 체제를 운영하면서 정부는 물론 시민들의 Mind가 자율화·개방화되었고, 영어구사능력을 갖춘 전문 인력을 갖추고 있어 무역활동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없으므로 국제 자유도시로서 경영 활동을 수행하기 편리한 환경을 갖추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

행정적인 차원에서 이러한 국제경영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윈스탑 행정 지원체계를 통해 국제 물류, 투자, 금융 등 지원 산업을 발전시키고 있으며 정부의 간섭을 최소화하고 투명한 행정 절차를 구축하여, 민간의 주도적인 역할로 항구도시가 운영되고 있다.

화물관리 측면에서 홍콩의 수출입화물에 대한 세관절차는 일반적으로 생략 하지만 마약, 총기류, 축산물 밀수 등 사회안전 및 공공보건 등과 관련한 세관감시 활동은 매우 엄격하게 수행함으로써 무역 원활화와 단속업무의 조화를 꾀하고 있다.

이러한 인프라와 제도적인 바탕위에 현재에도 투자 유치기구로서 재무부와 정부기구를 중심으로 외국인 투자확대를 위한 전략이나 프로젝트 관리 등 지속적으로 허브화를 추진하고 있다.

---

35) 이창재(2003), p.142

## 2. 물류중심형 자유지역(2) - 독일 함부르크자유항

### 1) 개요

독일은 1988년부터 함부르크항을 자유지역과 자유창고(Free Warehouse)로 지정한 이래, 현재 6개항<sup>36)</sup>을 자유항으로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그 중 함부르크 자유항이 최대 규모이다. 함부르크 자유항은 엘베강 하구로부터 120km 내륙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선박의 중간기착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선박에는 세관 특별 깃발을 게양하도록 하고 있다.

함부르크항은 Kohlbrand강을 경계로 Old Port(1888~)와 New Port(1910~)로 구분되는데, 전체 항만(하류 포함) 면적 75km<sup>2</sup> 중 자유항은 16km<sup>2</sup>(484만평)로 21%를 차지하고 있다. 자유항 경계 23km에는 3m 높이의 Fence가 설치되어 있다. 함부르크항은 유럽 역내의 관문적 역할을 수행하는 전형적인 물류중심형 자유항이다. 한해 1만2천여척의 외항선이 기항하는 함부르크항은 25개 선사에 의해 80여개 국가와 연결돼 있다. 이러한 지리적 이점을 활용하여 함부르크 항의 항만물류산업은 연간 50억 달러의 부가가치를 창출한다.

### 2) 운영 현황

독일의 자유항에서는 대체로 관세 및 통관절차 없이 모든 선박이 자유롭게 출입하고, 화물도 자유로이 적재·하선할 수 있다. 그러나 수입물품을 자유항으로부터 관세영역으로 반출할 경우에는 필요한 세관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독일 자유항에서는 상품의 환적 및 보관, 선박의 건조, 개조, 수리, 장비 탑재, 해체, 상품의 제조·가공 등과 선적서류에 의한 화물의 자유로운 이동이 허용된다. 자유항 중 구항에서는 거주가 허용되고, 관세지역에서 자유항으로 반입하는 물품은 수출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자유항내에서 제

---

36) Hamburg, Bremen, Bremerhaven, Cuxhaven, Emden, Kidel

조·가공한 물품을 관세영역으로 반입할 때에는 원료과세에 의한 수입통관이 가능하고, 제조·가공 후의 잔존물품에 대하여는 관세를 면제한다.

### 3) 성공요인 및 시사점

2002년 10월 함부르크항은 최첨단 무인 자동화 터미널인 CTA(Container Terminal Altenwerder)를 건설하였다. 연간 200만TEU 처리능력을 갖춘 CTA는 로테르담항의 자동화 부두인 ECT보다 처리 수준을 한 단계 높인 터미널로써, 자동 야드크레인(ATC)과 무인운송차량(AGB)으로 24시간 연속적이고 효율적인 하역 작업이 가능해 인건비 50% 절감과 하역 생산생도 다른 터미널에 비해 6배 가량 높다.

독일의 함부르크항은 EU가 제시하는 원칙 하에서 운영되고 있다. EU에서는 운영자의 재고 및 회계관리와 경영관리조직의 수준에 따라 물류 창고의 유형을 결정한다. 유형별로 세관통제를 차별화함으로써, 잠재적 운영자로 하여금 경영조직 고도화와 물류정보화를 추구토록 하고 있다. 그리고 배후 Distri-Center의 설치 활성화로 보세구역이 세관감시의 대상이라기보다는 물류센터로서 인식되고 있다.

EU의 통일관세법에서는 누구나 재고기록에 대한 세관승인을 받으면 Free Zone 내에서 운영자가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함부르크 자유항에는 629개사의 Operator가 있으며, 이들 각각의 Stock Recording을 관리·심사하기 위한 많은 세관인력과 조직이 필요(6개 세관, 800여명)하다.<sup>37)</sup> 따라서 운영자의 개념 정립, 해당 지역의 통제용이성 등이 자유지역 관할 세관의 조직·인력규모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 3. 생산중심형 자유지역 - 대만의 수출가공구

### 1) 개요

---

37) 관세청(2002), p.18

대만은 수출가공구(Export Processing Zone)와 과학공업원구(Science-Based Industrial Zone) 등 두 가지 유형의 특정지구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수출산업 전용단지인 수출가공구는 1965년부터 수출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수출입을 자유화하고 각종 수속 절차를 간소화하여 효율을 높이고 있으며, 수입관세를 면제해 주고 있다. 현재 5개소에 제조·조립, 연구·개발, 무역, 컨설팅, 창고, 중개, 운송, 포장, 수리사업 등의 기업이 입주하고 있으며 수출전용단지로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1997년 이후 제조, 운송, 금융, 미디어 및 통신을 포괄하는 종합무역지역인 WTZ (Warehouse Transshipment Special Zone)를 추가로 신설하여 현재 8개 지구 총면적 495.4ha를 운영 또는 개발하고 있다.

첨단기술 연구개발단지인 과학공업원구는 1978년 고급기술의 도입 과학기술인재 유치, 국내 공업기술연구 장려를 목적으로 용자금제공 혜택, 관세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며, 신추, 타이난 등 2개소에 설치·운영중이다.

## 2) 주요 특징 및 시사점

대만의 수출가공구와 과학공업원구는 정부조직이 설립하고, 관리처(혹은 관리국)에서 직접적인 관리 및 운영을 담당하여 관리한다. 또한 두 특정지구는 구획을 명확히 하여 지구내에서 발생하는 경제활동을 관리 및 통제하고 있다. 수출가공구의 경우 담장 또는 여타의 시설물을 설치하여 관세영역과 분리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과학공업원구의 경우에도 보세지역에 울타리 등의 격리시설물을 설치하여 수출입화물을 엄격하게 관리한다.

수출가공구는 원칙적으로 생산품을 전량 수출하도록 하는 수출전용공단의 성격이 강한데 비하여 과학공업원구는 외국의 자유무역지대와는 달리 주거단지가 과학공업원구 내에 위치하여 첨단 기술 산업의 제조, 연구 개발은 물론 연구 인력을 양성할 과학중고교를 운영하여 연구소 및 기업체에 인재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수출가공구 및 과학공업원구의 토지는 원칙적으로 공유지로 하여 토지를 이용하는 업체는 임대료를 납부하고 필요한 경우 사회기반시설의 건설비용도 부담하고 있다.

#### 4. 복합형 자유지역 - 미국의 외국무역지역

##### 1) 개요

대표적인 복합형 자유무역지역으로서 미국의 외국무역지역(FTZ ; Foreign Trade Zone)은 일반지역(General Purpose Zone)과 준지역(Sub-Zone)으로 이원화되어 있다.<sup>38)</sup> FTZ은 법적으로 미국의 관세영역 밖에 위치하는 지역으로 관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외국 및 내국물품의 반입이 가능하며, 간소한 절차로 제조·가공·조립·분배·해체·전시·장치·판매·재포장·파기·수출 및 관세영역으로 반입등의 활동이 가능한 지역을 말한다.

FTZ은 개항 또는 개항의 근처에 입지하여 접근이 제한된 구역으로, 도입 초기에는 울타리가 있었으나, 최근에는 울타리가 없어지는 추세이다. FTZ 위원회의 설치허가를 받은 공공기관(Grantee) 또는 세관의 감독을 받는 민간기업(Operator)의 책임하에 설치·운영되고, 관세법의 적용만이 배제되며, 기타 연방법 및 자치단체법은 계속 적용된다.

---

38) GP-zone과 Sub-zone의 차이점은 특정시설이 Grantee가 설정한 지역 내부에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구별되는데 내부에 있으면 GP-zone, 외부에 있으면 Sub-zone이고, 양 zone에서의 활동범위와 법적 지위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표 6] 미국 외국무역지역의 개념

구 분	일반지역	준지역
위 치	○ 공·항만 인접지역(60법정마일 또는 자동차로 90분 이내)	○ 제한없음
입주기업	○ 다수(single-user도 있음)	○ 1개
용 도	○ 보관, 단순가공 등 물류기능	○ 제조, 가공 등 보세공장 기능
형 태	○ 부두, 공장부지, 단일 건물, 이들 시설의 종합 집적 형태	○ 기존 개별업체의 생산시설(공장)
입주방법	○ 창고시설 또는 공단에 임대형태로 입주	○ 지정주체가 기존공장 허가

자료 : 한국해양수산개발원(1998), p.148

하나의 FTZ Project에 하나의 Grantee(설치 신청자 : 지자체, 지방항만청, 기타 공공단체)가 존재하는 경우와 하나의 FTZ Project에 하나의 일반지역과 1개 이상의 준지역이 존재하는 경우로 대별되는데 각 지역에는 하나 또는 다수의 운영자가 존재한다. 미국의 외국무역지역은 국내기업의 해외 이탈을 방지하여 자국내 기업 활동을 유지·확장함으로써, 고용을 창출하고 국제무역 거래를 촉진시키는데 주목적을 두고 있다.

## 2) 사용허가 절차 및 과세 방법

주로 자치단체, 지방항만청 등 공공기관이 일반 기업체에 우선하여 FTZ 위원회에 FTZ 설치허가를 신청한다. 지방자치단체 등은 설치 허가 신청시 FTZ에 설치될 시설물과 자금조달계획, 경제에 미치는 영향, FTZ에서 행해질 작업 등에 관한 보고서 등을 제출하고, FTZ 위원회는 신청서류 심사 후 허가하고 있다.

FTZ 위원회로부터 설치 허가를 받은 후, 운영자가 세관장에게 사용허가를 신청하면 세관은 Grantee 및 운영자의 피고용인의 신원, 감시단속상의 용이성 여부 등을 심사하여 사용허가(사용자에 대한 심사는 대체로 생략)

한다.

FTZ에서는 제조·가공·조립·분배·세정·해체·전시·장치·판매·재포장·파기·수출 및 관세영역 반입 행위가 허용되며, 제조의 경우 제한이 가능하다. 여기서 판매는 원칙적으로 도매거래만을 인정하고, 소매거래는 내국물품만이 가능하나 Grantee 허가 및 FTZ 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FTZ 내에 반입된 외국물품 중 시설재를 제외하고는 관세 및 물품세가 부과된다. FTZ내에서 재수출된 물품, 파손·증발 누수 등으로 인한 재고손실분과 다른 FTZ 입주기업에 판매된 물품, 반송된 물품 등에도 관세가 부과된다. 그러나 외국물품을 국내로 반입시에는 관세가 부과된다. 관세의 과세방법에는 제품 생산에 투입된 외국물품에 대하여 제품세율로 과세하는 제품과세<sup>39)</sup>와 반입량에서 재고량을 공제하여 사용량에 대하여 과세하는 원료과세가 있으며, 화주가 과세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sup>40)</sup>

### 3) 주요특징 및 시사점

미국 세관의 FTZ 관리는 기본적으로 매우 엄격한데, FTZ 위원회의 설치 허가 후에도 세관의 사용허가가 없으면 FTZ를 사용할 수 없다. 물품의 반출입시 세관의 허가가 필요함은 물론, 지역 안에서 제조·가공·전시·파기 및 일시반출시에도 세관의 허가가 필요하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허가는 거의 자동 수리되고 있고, 1년 단위의 포괄신청 및 간이신청절차 등을 마련하여 최대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있다. 그리고 관련 법령에서는 울타리 설치가 의무적이거나, 최근에는 울타리 개념이 없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미국의 FTZ에서는 자치단체(Grantee)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것이 특징이

---

39) 미국의 제품과세는 내국물품(원재료)과 FTZ에서 발생한 부가가치를 부과한다는 점에서 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및 내국원재료도 제품가격 전체에 포함하여 과세하는 우리나라의 제품과세와 차이가 있다.

40) 예컨대, 부품 A(관세율 10%), 부품 B(6%), 부품 C(무세)를 수입하여 FTZ에서 완제품(3%)를 제조하여 국내로 반입할 때 부품 C는 무세(원료과세), 부품 A, B는 3%의 세율 적용(제품과세)이 가능하다

다. 자치단체가 부두·교통시설 건물·부지 등 인프라와 용수·전기·가스·상하수도 공급 시설 등을 의무적으로 조성한 후 기업들을 유치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에서도 이러한 점을 배워 자유지역의 지정 및 운영 시 항만관리권을 자치단체에 이양하여 입항비 등 항만관련비용을 경감하는 등 지역발전을 위해 항만간의 경쟁을 유도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자치단체가 배후지역을 적극 조성하고 건축·시설물을 설치하여 입주기업에 임대함으로써 건축법 등 각종 법률에 의한 규제를 극복하는 것이 필요하다.



## 제 3 장 자유무역지역의 현황과 문제점

정부는 종전의 관세자유지역과 자유무역지역의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이원화된 설치 및 운영에 의한 비효율을 극복하고 시너지효과를 달성하여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두 지역을 통합하게 되었다. 이에 통합된 자유무역지역의 근거 법률이 되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본문 7장 70조, 부칙 16조로 구성되어 있다. 이 장에서는 동 법률의 내용을 분석하여 자유무역지역제도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은 무엇인지 살펴본다.

### 제 1 절 한국 자유무역지역 통합

#### 1. 통합 배경

수요나 공급의 변화가 국제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만큼의 영향력을 가진 대국의 경우, 수입재화에 대한 관세부과는 수입재화의 국내가격을 상승시켜 국내수요를 감소시킨다. 나아가 세계 수요의 감소를 가져와 수입재의 국제상대가격을 하락시키기 때문에 대국의 교역조건은 오히려 개선된다. 따라서 관세부과는 직접적으로는 수입재의 국내가격을 상승시키고, 간접적으로는 교역조건을 개선함으로써 국내경제의 사회후생을 증대시킬 수 있다.

그러나 일국이 최적관세의 부과를 통하여 자국의 후생을 증대시킨다고 하더라도, 세계 전체적으로는 무역규모가 감소하기 때문에 결국 후생은 감소하게 된다. 또한 양국이 서로 상대국의 최적관세에 대해 보복관세를 취하게 될 경우, 어느 한 나라도 사회후생을 증대시킬 수 없으며, 세계 전체의 후생을 더욱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그런데 특정 항만 또는 지역을 비관세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해당지역에 대한 관세장벽을 낮추거나 제거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그 지

역에서는 국제무역이 훨씬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므로 비관세지역을 국제무역을 진흥하기 위한 직접적인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관세자유지역이나 자유무역지역의 경우 수출입 관련 산업의 성장, 고용 및 부가가치 창출, 소득증대 등 지정에 따른 경제적 효과도 서로 비슷하게 나타나게 된다.

그럼에도 한국의 경우 관세자유지역과 자유무역지역은 소관부처 및 근거 법령을 달리하여 따로 운영되어 왔다. 이는 외국인투자자의 입장에서 볼 때 불필요한 혼란과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실제로 지난 1999년에 관세자유지역을 도입할 당시부터 양 제도의 중복성과 관련하여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자유무역지역은 제조업체 중심으로, 관세자유지역은 물류업체 중심으로 운영한다는 관계부처간의 조정을 통해 양 제도를 독립적으로 운영하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최근 자유무역지역은 제조업과 물류업이 연계된 복합형 자유무역지역으로 전환 및 발전하는 것이 국제적인 추세이며, 정부 부처에서도 이원화된 분리운영은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며 유사한 제도의 운영으로 외국인 투자자의 혼란을 초래한다는 부작용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재경부와 산자부가 두 지역을 통합하여 자유무역지역으로 일원화하기로 합의하고, 정부는 2004년 6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을 전면 개정 시행하여 관세자유지역을 자유무역지역으로 전환 또는 통합함으로써 외국인 투자환경을 개선하고 우리나라가 동북아 경제·물류 중심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한 국·공유재산의 임대조건 및 임대료 감면 등 각종 지원의 확대를 통하여 외국인투자유치의 효과를 제고하며, 무역의 진흥, 국제무역의 원활화 및 지역개발의 촉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였다.

## 2. 주요 개정 내용 및 법률 구성 체계

## 1) 법률의 구성 체계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본문 7장 70조, 부칙 16조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총칙)은 3개조로 법률의 목적, 정의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다.

제2장(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등)은 총 4개조로 자유무역지역의 지정절차, 지정요건, 지정변경 및 예정지역의 지정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제3장(자유무역지역의 관리 및 입주)은 총 21개조로 관리권자, 입주자격, 입주허가 및 취소, 국·공유토지 또는 공장의 임대 및 매각, 임대료의 감면, 공장 등의 건축특례 및 처분제한, 통제시설의 설치 및 공동시설의 유지비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제4장(물품의 반입·반출 및 관리 등)은 총 15개조로 물품의 반입 또는 수입, 국외로의 반출 또는 수출, 내국물품 반출확인, 역외작업, 보세운송, 재고기록 및 사후조사, 물품의 폐기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제5장(관세 등의 부과 및 감면 등)은 총 6개조로 관세부과기준, 관세 등의 면제 및 환급, 법인세 등 직접세 감면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제6장(보칙)은 자유무역지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출장소 설치, 출입제한, 권한의 위임·위탁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제7장(벌칙)은 각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규정과 조사 및 처분, 과태료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부칙에는 시행일과 다른 법률의 폐지 및 개정, 각종 경과조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 2). 주요 개정 내용

개정 법률인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관세자유지역제도를 폐지하고 기존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등에 관한 법률』을 전면 개정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관세자유지역과 자유

무역지역의 일원화, 관리권자의 다양화, 입주자격의 완화, 지자체소유 토지 및 공장 등의 임대 및 매각의 특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임대료 감면, 관세 등의 면제 또는 환급 등 세제 혜택 범위의 확대 등이다.<sup>41)</sup> 이에 대한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관세자유지역을 자유무역지역으로 일원화하였다. 국제물류기지육성을 위한 관세자유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여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통합하고, 제조업중심의 자유무역지역과 물류업 중심의 관세자유지역을 제조업과 물류업 등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자유무역지역으로 일원화하였다.(법 제1조 및 부칙 제2조)

둘째, 관리권자를 다양화하였다.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 공항 및 배후지·화물터미널 유통단지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장관, 항만 및 배후지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권자가 되도록 하여, 자유무역지역별로 전문적이고 특성 있는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또한 지자체 또는 공항공사·항만공사 등에 업무를 위임·위탁하여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하였다. (법 제8조)

셋째, 입주허용업종을 확대하고 입주자격을 완화하였다. 종전의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수출을 주목적으로 하는 제조업, 물류업 등에 대해서만 입주를 허용하던 것을 확대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이 아닌 경우에도 입주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단, 관리권자는 외국인투자기업, 고도기술수반사업을 영위하는 자 등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입주허가를 하도록 함으로써, 자유무역지역에서의 제조·무역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하였다.(법 제10조 및 제11조제2항)

넷째, 지자체가 소유하는 토지 및 공장 등을 임대하거나 매각할 때, 특례규정을 두어 입주기업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였다. 임대료 또는 매각가격은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임대기간은 입주기업체의 경우 50년의 범위 이내로, 지원업체의 경우 10년 이내로 할 수 있도록 하였다.(법 제18조)

다섯째,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임대료 감면을 확대하였다. 자유무역지역

---

41)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등에 관한 법률 주요내용, 관보 제15650호(2004.3.22)

안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은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보아 그 토지·공장 등에 대한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고도기술수반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토지·공장 등에 대한 임대료 감면 외에 추가적 감면이 가능하도록 하였다.(법 제 20조제1항)

여섯째, 관세 등의 면제 또는 환급 등 세제 혜택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입주기업체가 자유무역지역 안으로 반입하고자 신고한 내국물품에 대하여는 수출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세 등을 환급하고 부가가치세의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자유무역지역 안에서 입주기업체간에 공급하는 외국물품이나 입주기업체간에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의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하였다.(법 제45조)

## 제 2 절 한국 자유무역지역의 현황

### 1. 자유무역지역제도의 개요

#### 1) 개념 및 목적

관세자유지역을 흡수·통합한 것이 자유무역지역이므로 그 개념이나 목적은 종전의 자유무역지역과 관세자유지역을 합해 놓은 것과 동일하다. 통합 후 자유무역지역은 관세를 비롯한 각종 조세의 감면, 저가의 임대료, One-Stop 행정서비스 등이 지원되는 특수한 산업단지·공항·항만으로서, 제조업과 물류업을 병행하는 대규모 외국인투자기업의 유치에 가능해짐으로써 외국인투자유치에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자유무역지역은 관세법·대외무역법 등 관계 법률에 대한 특례와 지원을 통하여 자유로운 제조·물류·유통 및 무역활동 등을 보장하기 위한 지역

으로서 자유무역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한 지역이다.(자유무역지역법 제2조)

자유무역지역법 제1조는 자유무역지역의 목적을 ‘외국인투자의 유치, 무역의 진흥, 국제물류의 원활화 및 지역개발 촉진’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외국인투자의 유치, 무역의 진흥 및 지역개발 촉진은 종전의 자유무역지역의 정책목적이며, 국제물류의 원활화는 관세자유지역의 정책목적이다.

## 2) 성격

자유무역지역은 종전의 자유무역지역이나 관세자유지역과 같이 관세선 밖에 위치한 비관세지역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그러나 비관세지역화의 정도를 비교해 보면, 종전의 자유무역지역보다는 강화되었으나, 관세자유지역에 비하여는 약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즉, 국내에서 반입하는 물품을 수출하는 물품으로 간주하고, 지역 안에서 입주업체 간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의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종전의 자유무역지역에 비하여 더 외국에 가까운 성격을 갖게 되었다.

그에 반해 관세청장이 정하는 공항만 지역에 대하여 장치기간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한 점 등은 관세자유지역보다 외국으로서의 성격을 약화시키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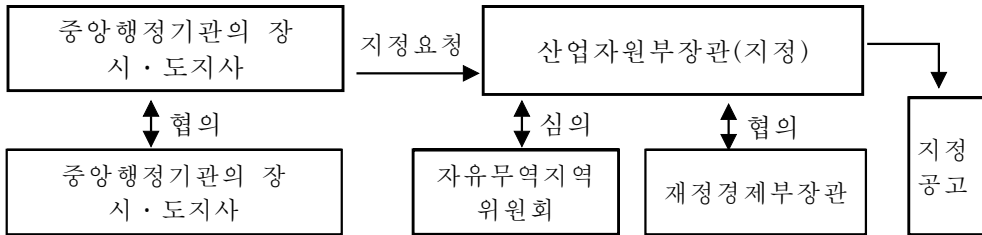
## 2.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 1) 지정절차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 ·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시·도지사와의 협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자유무역지역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지정

요청이 있는 경우 산업자원부장관은 지역의 실정, 지정필요성 및 지정요건을 검토한 후 자유무역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유무역지역을 지정하도록 되어있다.

[그림 2] 자유무역지역 지정절차



특이한 사항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자유무역지역을 지정할 때 재정경제부장관과 미리 협의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자유무역지역 지정의 실제적 효과가 대부분 세제혜택이므로, 조세정책을 총괄하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자유무역지역 지정 남발을 방지하고 관련기관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자유무역지역을 지정할 때 재정경제부장관과 사전협의를 하도록 규정한 것은 법률상으로는 협의에 불과하지만, 이는 사실상 협의에 해당하는 구속력을 가지는 것이므로 절차의 간소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절차라고 생각된다.

## 2) 지정요건

자유무역지역의 지정요건은 첫째, 산업단지, 공항 및 배후지, 유통단지, 화물터미널, 항만 및 배후지로서 화물처리능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고, 둘째,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으며, 셋째, 물품의 반입·반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통제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계획이 확정되어 있을 것 등으로 법률이 제시하고 있다.

### 3) 예정지역의 지정

산업자원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의 요청에 의하여, 자유무역지역예정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예정지역의 지정요건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요건과 동일하다.

따라서 예정지역의 지정기간은 3년 이내이며, 3년의 범위 내에서 지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산업자원부장관은 예정지역의 지정기간이 끝나기 전에 자유무역지역의 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예정지역의 지정을 즉시 해제하도록 하고 있다.

예정지역의 지정제도는 종전의 자유무역지역법 제4조제5항 및 관세자유지역법 제7조의 규정을 수용한 것으로, 자유무역지역이 선개발 후지정되는 경우 개발을 촉진하고 업체유치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예정지역 지정에 따른 실익은 그리 크지 않다고 판단되는데, 이는 새로운 자유무역지역도 종전의 자유무역지역과 같이 사실상 선지정 후개발 방식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 3. 자유무역지역의 관리 및 입주

### 1) 관리권자

자유무역지역의 지정은 산업자원부장관이 하지만 자유무역지역의 관리는 별도의 관리권자가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지역별 특성에 따라 관리권자를 달리 정하여 자유무역지역에 대한 전문적이고 특성 있는 관리를 위해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산업단지인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 공항·유통단지·화물터미널은 건설교통부장관, 항만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각각 관리권자가 된다.

한편, 관리권자가 필요할 때에는 지자체 또는 공항공사·항만공사 등에



업무를 위임·위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sup>42)</sup> 자유무역지역의 관리에 있어서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관리권자는 입주기업체 및 지원업체의 사업 활동 지원, 공공시설의 유지·관리, 각종 지원시설의 설치·운영, 그 밖에 자유무역지역의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 등을 수행한다. 그리고 관리권자는 관리업무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유무역지역을 그 기능 및 특성에 따라 생산시설지구·물류시설지구·지원시설지구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표7] 자유무역지역의 관리기관

신청권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앙행정기관의 장</li> <li>○ 시·도지사</li> </ul>
지정권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자원부장관(자유무역지역위원회 심의)</li> </ul>
관리권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단지 : 산업자원부장관</li> <li>○ 공항 및 배후지 : 건설교통부장관</li> <li>○ 유통단지 : 건설교통부장관</li> <li>○ 화물물터미널 : 건설교통부장관</li> <li>○ 항만 및 배후지 : 해양수산부장관</li> </ul>
수임·수탁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li> <li>○ 지방자치단체의 장</li> <li>○ 공항·항만관리자</li> <li>○ 한국산업단지공단 등</li> </ul>

## 2) 입주업종 및 허용행위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은 크게 제조업, 도매업, 물류업 및 지원업으로 구분된다.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할 수 있는 자를 더 자세히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 ① 수출을 주목적으로 하거나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제조업종의 사업을

42)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5조(권한의 위임·위탁)

영위하고자 하는 자

- ② 수출입거래를 주목적으로 하는 도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 ③ 물품의 하역·운송·보관·전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 ④ 입주기업체의 사업을 지원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 ⑤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
- ⑥ 국가기관

여기서 제조업 및 도매업의 경우에는 입주자격에 제한을 두고 있다. 제조업종의 경우에는 수출을 주목적으로 하는 기업이거나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에 입주가 가능하다. 다만 관리권자가 국제물류의 원활화, 지역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내수를 주목적으로 하는 국내기업에 대하여도 입주하게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도매업의 경우에도 수출입거래를 주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입주할 수 있다.

자유무역지역에서는 관세자유지역과 종전의 자유무역지역에서 수행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물류활동에 필요한 보관, 분류, 혼합, 라벨링, 분배, 점검, 세정, 해체·절단, 전시, 판매(도매거래), (재)포장, 파기, 수리 및 이와 유사한 행위와 제조, 가공, 조립 등의 행위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볼 때 자유무역지역에서 수행할 수 있는 활동의 범위는 가장 광범위하다고 할 수 있다.

[표 8] 국가별 자유무역지역의 허용활동

국 가	기 능
미 국	제조(제한가능), 가공, 조립, 분배, 분류, 혼합, 라벨링, 점검, 세정, 해체·절단, 전시, 판매(도매거래), (재)포장, 파기, 수출, 환적
싱가포르	제조(제한적), 저장, 판매(소매거래 허가제), 전시, 수리, 분리, (재)포장, 조립, 혼합, 조작, 분배, 분류, 등급부여, 멸각, 환적, 장치, 재수출
홍콩	제조, 가공, 조립, 분배, 전시, 샘플링, 포장, 검사, 상표부착, 보관, 장치, 저장, 경매, 재수출 등
중국	가공, 혼재, 전시, 분류, (재)포장, 상표부착, 상표표시, 장치, 보관, 환적, 수출입 무역업, 금융서비스업, 물류업
대만	수출가공구 : 제조, 가공조립, 연구·개발, 무역, 컨설팅, 창고, 운송, 포장 과학공업원구 : 제조, 연구, 주거기능
일본	수입촉진지역 : 수입품의 보관, 분배, 전시, 제조, 가공, 도매, 저장 등 자유무역지구 : 제조, 가공, 혼합, 보관, 장치, 개장(개장), 포장, 전시, 도매, 품질조사·조정, 수출입 무역업, 중계 등 총합보세지역 : 수입촉진지역 및 자유무역지구 기능 총괄
멕시코	상품의 변형, 제조, 조립 및 가공, 수선 재수출
함부르크	제조, 가공, (재)포장, 분리, 등급화, 재분류, 보수, 장치, 환적, 판매(도매), 무역, 운송, 주선
로테르담	조립, 가공, 주문처리, 품질관리, 보관, 포장, 상표부착, 재고관리, 검사, 운송 등의 일체의 물류기능
영국	조립, 가공, 보관, (재)포장, 품질관리, 재고관리, 상표부착 등 주로 물류기능

자료 : 한국해양수산물개발원, 관세자유지역 도입방안 연구, 1998

### 3) 입주허가 및 입주허가 취소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입주자격을 갖춘 후 관리권자의 입주허가를 받아야 한다. 여기서 입주자격이라 함은 제조업

체의 경우에는 수출을 주목적으로 하거나 외국인투자기업이어야 함을 말하며, 도매업체의 경우에는 수출입거래를 주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물류업의 경우는 물품의 하역·운송·보관 전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이어야 하며, 지원업의 경우에는 입주기업체의 사업을 지원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당초 정부안<sup>43)</sup>에서는 자유무역지역의 생산·무역활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내수를 주목적으로 하는 국내제조업체의 입주도 허용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 자유무역지역은 다른 산업단지 등과 차별이 없게 된다. 오히려 수출과 무관한 국내기업조차 주위의 다른 산업단지를 제쳐놓고 보다 큰 혜택을 부여하는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고자 함으로써, 산업단지 공급체계 전반에 걸친 혼란을 야기할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무분별한 국내업체의 입주를 제한하기 위해 외국인투자기업,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고도기술수반사업, 수출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입주허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sup>44)</sup>

자유무역지역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허가를 받았거나 입주자격을 상실한 경우 등에는 관리권자가 입주허가를 취소한다. 일단 입주허가가 취소되면 입주기업체는 취소 당시의 수출 또는 수입계약에 대한 이행업무 및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잔무처리업무를 제외하고는 그 사업을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그리고 6월의 범위 이내에서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잔여 외국물품등을 자유무역지역 밖으로 반출하거나 다른 입주기업체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또한 입주허가가 취소된 입주기업체는 자유무역지역 안에 소유하는 토지 또는 공장 등을 처분하여야 한다. 입주기업체등이 공장 등의 설립을 완료하기 전에 취득한 토지 또는 공장 등을 처분하고자 하는 때에는, 먼저 관리권자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관리권자가 양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입주기업체등으로 하여금 관리권자가 선정한 다른 입주기업체등이나 입주자격이 있는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중

43) 2003. 11. 24. 산업자원부와 재정경제부가 공동으로 국회에 법안을 제출하였다.

44)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입주허가) 제2항.

전에 입주허가가 취소된 경우 입주기업체나 입주자격이 있는 제3자에게 먼저 양도하도록 하고, 다음으로 관리권자에게 양도하도록 한 것과는 달리, 관리권자에게 먼저 양도하고 그 후 다른 입주기업체나 입주자격이 있는 제3자에게 양도하도록 함으로써, 처분의 우선순위를 변경시키고 있다.

한편 관리권자가 입주허가를 하거나 입주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한 업체가 세관신고의무가 있는 외국물품을 반입하거나 외국으로 수출하지 않는 한 업체의 존재여부를 파악하기 어렵고, 이를 악용하여 밀수 및 탈세할 개연성이 높기 때문이다.

#### 4. 토지 또는 공장 등의 임대 및 매각

##### 1) 국·공유 토지 또는 공장 등의 임대 또는 매각

관리권자는 입주기업체에 국유 및 공유의 토지 또는 공장 등을 임대하거나 매각할 수 있고, 임대기간은 50년의 범위이내로 정할 수 있다. 종전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이 국유의 토지 또는 공장 등을 입주기업체에게 임대하거나 매각할 수 있었다. 임대기간은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준용하고, 외국인투자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10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다.

그러나 자유무역지역에서는 임대기간을 외국인투자기업인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50년의 범위이내로 할 수 있다. 관리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50년의 범위이내에서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또한 지원업체에 대하여는 10년의 범위 이내로 임대할 수 있도록 하되, 관리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0년의 범위이내에서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유의 토지 또는 공장 등의 경우 종전 자유무역지역에서는 관련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자유무역지역에서는 공유의 토지 또는 공장 등에 대하여도 지방재정법에 불구하고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하거나 매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외국인투자의 유치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료 감면 등의 지원근거가 미비하여 업체 유치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 2) 임대료 감면

관리권자는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외국인투자유치의 활성화를 위해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을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보아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특히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강화에 긴요한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이러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이러한 감면 외에 추가로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자유무역지역과 다른 지역과의 외국인투자지원 내용을 비교하여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표 9] 지역별 외국인투자 지원제도 비교

구 분	외국인기업전용단지	외국인투자지역	자유무역지역	관세자유지역
법적 근거	산업집적법제35조	외국인투자촉진법18조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제물류기지육성을 위한 관세자유지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지정 목적	외자유치	외자유치	외자유치, 무역진흥, 지역개발 등	국제물류기지육성, 외자유치
지정 위치	산업단지내	제한없음	항만·공항, 산업단지, 유통단지 등	항만, 공항, 유통단지, 화물터미널등
지역 특성	관세지역	관세지역	비관세지역	비관세지역
산업 집적도	집적지역	개별공장	집적지역	집적지역
지정 권한	산자부장관	시·도지사	산자부장관	재경부장관
입주 자격 (업종)	○ 외국인투자기업 ○ 제조업, 물류업 등 (외국인투자지분 30%이상. 단, 대불·평동은 10% 이상)	○ 외국인투자기업 ○ 일정요건 충족의 제조업, 고도기술수반사업, 산업지원서비스업 관광호텔업, 국제회의시설업	○ 외국인투자기업 ○ 제조업, 물류업, 무역업, 지원서비스업 등(외국인투자지분 10%이상)	○ 내·외국기업 ○ 물류업, 단순가공업, 지원서비스업 등 ※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외국인투자 지분 10% 이상
조세 감면	○ 고도기술에 한해 - 법인·소득세 : 10년 - 지방세 : 8~15년	법인·소득세 : 10년 지방세 : 8~15년	좌동 (1천만불이상, 물류업의 경우 5백만불이상 투자)	3천만불이상 투자 - 소득세·법인세를 7년간 100%, 3년간 50% 감면
관세 부과	자본재에 한해 3년간 면세	좌 동	비과세(시설재, 원재료 등)	비과세(음식료·주류·담배, 사무용 소모품등은 과세)
임대료 감면	○ 50년(갱신가능) ○ 고도기술 100% ○ 일반제조 75%	100% 50년(갱신가능)	전용단지와 동일	전용단지와 동일
자금 지원	예산당국방침에 따라 지원	용지매입비, 분양·임대료감면보조, 교육훈련보조, 인프라조성비 등 지원	예산당국의 방침에 따라 국비지원	예산당국의 방침에 따라 국비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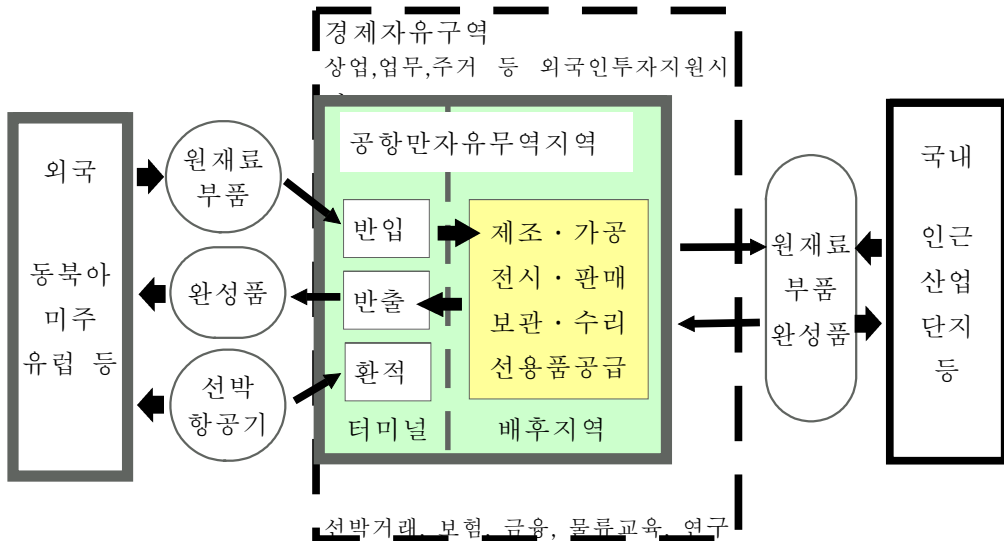
자료 : 재정경제부(2002) 보도자료(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 관련 세제지원방안 문답자료)를 수정 보완

## 5. 물품의 반입 · 반출 및 관리

### 1) 물품의 반출입절차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외국물품과 외국으로 반출하려는 물품은 관세법상의 수출입절차가 적용되고 관세가 부과된다. 이에 비해 자유무역지역 물품은 원칙적으로 관세법의 적용이 배제되고, 자유무역지역법에 의한 반출입절차가 적용된다. 관세법은 자유무역지역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만 적용된다. 따라서 이러한 물품의 반출입절차에 대한 특례인정은 비관세지역인 자유무역지역의 성격상 당연한 것이다.

[그림 3] 자유무역지역 물류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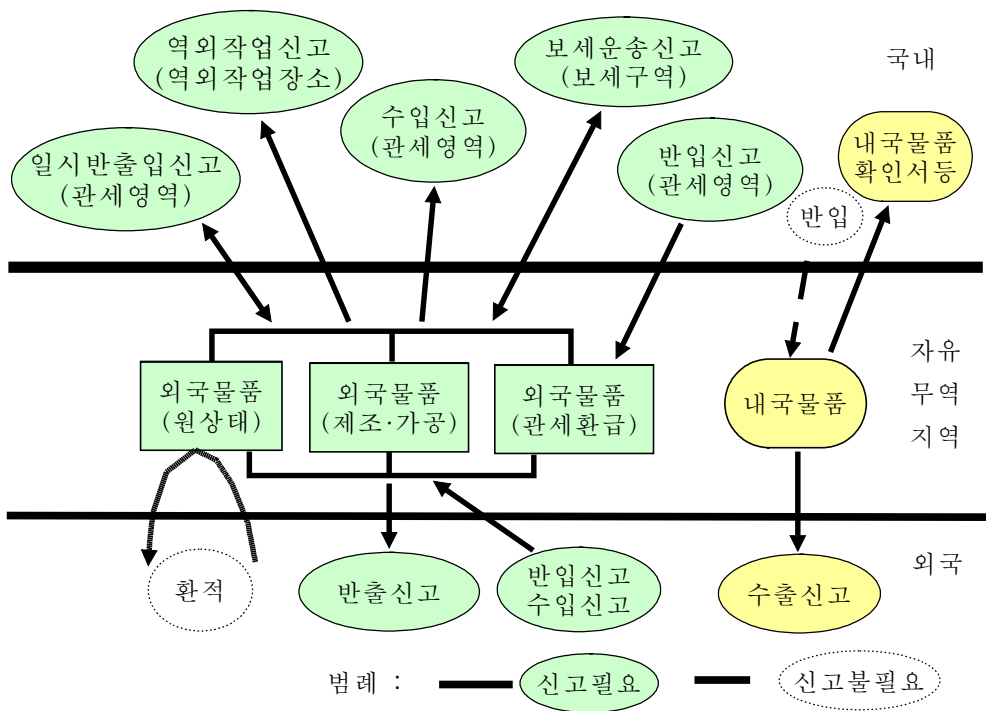
외국에서 자유무역지역으로 외국물품을 반입하거나, 자유무역지역에서 국내 또는 외국으로 외국물품을 반출하거나, 자유무역지역 안에서 관세를 납부한 후 외국물품을 사용·소비하는 절차는 종전의 자유무역지역과 같다. 즉 자유무역지역에서 국내로 외국물품을 반출할 때 하는 수입신고, 보세운



송신고, 일시반출입신고 등과 자유무역지역에서 외국으로 물품을 반출할 때 하는 반출신고 및 수출신고 등은 종전과 같다.

물품의 반출입 절차에서 종전과 달라진 점은 역외가공승인이 역외작업신고로 변경된 것이다. 이에 대하여는 뒤에서 자세히 언급하기로 한다. 그리고 물류업체의 경우 종전에는 관세면제물품을 사업목적에 관계없이 수입신고 및 관세를 납부하지 않고 사용·소비할 수 있었으나, 당해 사업 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경우에만 관세를 납부하지 않고 사용·소비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다.

[그림 4] 자유무역지역의 물품 반출입 관련 신고도



내국물품의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세관신고를 하지 않고도 자유롭게 반입할 수 있다. 다만, 내국물품을 자유무역지역으로 반입하고 관세 등의 면제 또는 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내국물품 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내국물품 반입신고는 수출신고와 동등한 효과를 가지며, 내국물품 반입신고를 할 수 있는 물품은 관세면제대상물품과 같다.

내국물품의 반입신고는 종전의 자유무역지역에는 없었던 것으로 관세자유지역의 내국물품 반입신고를 그대로 준용한 것이다. 이 때문에 종전의 자유무역지역보다 비관세지역화가 크게 진전되어, 외국에 준하는 법적 지위를 갖게 되었다.

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자유무역지역으로 반입한 내국물품을 국내로 다시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내국물품확인서, 세금계산서 등 내국물품으로 반입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리고 내국물품을 자유무역지역에서 국외로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출신고를 하도록 되어있다.

## 2) 역외가공신고

입주기업체가 역외가공작업을 하고자 할 때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던 것을 세관장에게 신고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즉 입주기업체가 가공 또는 보수하기 위하여 외국물품등을 관세영역으로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공·보수작업의 범위, 반출기간, 대상물품, 반출장소를 정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도록 하였다. 세관장은 신고가 적합하게 이루어진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수리하여야 한다.

역외가공은 자유무역지역 안에서 생산제품을 제조하는데 필요한 여러 단계의 생산 공정 가운데 일부 공정을 자유무역지역 밖의 다른 지역에서 수행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는 자유무역지역이 가지는 공간적 제약의 극복, 지역고용 및 지방세수의 증대, 위탁업체로부터 수탁업체로의 기술이전 등 여러 측면에서 긍정적 기능을 수행하여 왔다.<sup>45)</sup>

입주기업체의 입장에서든 가공비가 적게 들고 제조원가가 절감되는 역외가공을 선호하는 편이다. 즉, 역내에서 직접가공을 할 경우 그 가공에 필요한 소요인원 전부를 고용하여야 되고, 그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뿐만 아

---

45) 반대로 역외가공제도는 특정한 지역으로 한정된 자유무역지역을 확대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엄격히 운영하여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나라 상여금, 퇴직금, 복리후생비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역외가공을 할 경우 이러한 임금과 각종 경비를 절감할 수 있으며, 인력관리에서 발생하는 여러 요인들도 줄일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역외가공은 현실적으로 기존 자유무역지역에서 입주기업체의 수출입 및 반출입 활동에 있어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아래 [표 10]를 보면 역외가공을 위해 반출한 원재료의 금액이 총수출액의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0] 자유무역지역(마산·익산) 역외가공 비중

(단위 : 천\$)

구분	총수출액 (a)	원자재반출금액		가공후반입금액	
		(b)	비중(b/a, %)	(c)	비중(c/a, %)
2001	4,604,845	1,001,126	22	1,071,321	23
2002	4,233,763	1,032,232	24	1,101,019	26
2003	4,600,786	958,558	21	1,028,095	22
계	13,439,394	2,991,916	22	3,200,435	24

자료 : 산업자원부(2004), 내부자료

역외가공의 허용방식을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으로부터 세관장의 신고수리로 변경한 것은 관세 탈루 및 밀수 방지, 역외작업 인정기관과 사후관리기관의 일치를 통한 절차의 간소화, 허용방식의 변경을 통한 규제완화 때문이다.

이 같은 변경에 대해 일부 입주기업체들은 세관행정이 기본적으로 규제 또는 확인행정이므로, 신고제도의 경직적 운영으로 인하여 역외가공의 위축을 우려하기도 한다.<sup>46)</sup>

46) 마산자유무역지역기업협회(회장 : 이재욱)는 국회 산업자원위원회에 종전의 역외가공제도의 유지를 원하는 의견을 송부함(9710100-2003-8061, 2003. 12. 19)

### 3) 물품의 반출입 제한 등

자유무역지역이 관세선 밖의 외국으로 간주된다고 하더라도, 지리적으로는 우리나라의 국경선 안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관세법에서 수출입을 금지하는 물품은 자유무역지역에서도 수출입 활동을 할 수는 없다. 다시 말해 헌법질서 내지 공공질서 및 풍속을 해치는 물품, 정부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화폐 등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은 자유무역지역으로 반입하거나 자유무역지역에서 반출할 수 없다.

그리고 세관장의 권한에 의해 국민보건 또는 환경보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물품,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서도 자유무역지역 안으로의 반입과 자유무역지역 밖으로의 반출을 제한될 수 있다.

한편 공항 또는 항만으로서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에 반입되어 수입 신고된 물품은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당해 물품을 자유무역지역으로부터 반출하여야 한다. 그리고 동 지역에 장치된 물품이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관세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매각하거나 국고 귀속할 수 있다.

### 4) 반출입물품의 재고관리

세관장은 자유무역지역에서 반출·반입 수출·수입되는 물품을 당해 물품이 장치되어 있는 장소에서 검사하거나 확인할 수 있다. 입주기업체는 자유무역지역으로 반입하거나 자유무역지역에서 반출한 물품, 자유무역지역 안에서 사용·소비하거나 생산한 물품에 대하여 재고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 및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세관장은 재고관리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입주기업체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세관장은 입주기업체에 대하여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5) 관세 등의 부과·감면

### ① 관세의 부과 및 감면

입주기업체는 자유무역지역 안에서 외국물품을 관세 등을 납부하지 않고 사용하거나 소비할 수 있다.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 종류 및 범위를 규정하는 방식은 중진의 자유무역지역과 동일하다.

반입신고한 기계·기구·설비 등 내국물품에 대하여는 수출하는 것으로 보아 관세 등을 면제하거나 환급하고, 부가가치세의 영세율을 적용한다. 또한 입주기업체간에 공급 또는 제공하는 외국물품등과 용역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율의 영세율을 적용한다.<sup>47)</sup> 이것은 관세자유지역에만 적용되던 것이었으나, 자유무역지역에도 적용함으로써 생산 활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자유무역지역 안에서 외국물품을 사용하여 제조·가공·조립·보수한 물품을 관세영역으로 반출하는 경우, 반출되는 물품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외국물품으로 본다. 즉 물품가격 전체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한다. 한편, 반입신고를 하지 않은 내국물품을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원재료로 사용한 때에는 당해 내국물품의 수량 또는 가격을 제조·가공·조립·보수한 물품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그 밖에도 자유무역지역예정지역에서 입주기업체가 건물 및 공장을 건축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반입하는 시설재에 대하여는 관세 등을 면제한다. 그리고 입주기업체의 공장 등에 대하여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통유발부담금을 면제한다.

---

47) 부가가치세의 영세율이란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 계산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계산하며, 매출세액 또는 매입세액은 매출액 또는 매입액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따라서 영세율의 경우 재화의 공급에 대한 매출액에 영의 세율을 적용하므로 매출세액은 영이 되는데, 여기에서 재화를 공급받을 때 자기가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하면 마이너스(-)가 되어 그 매입세액을 전액 환급받게 되는 것이다. 대표적인 영세율 적용대상은 수출재화이다.

## ② 법인세 등 조세감면

자유무역지역법은 법인세 등 조세감면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가지고 있지 않고, 단지 선언적 규정으로서 제47조(법인세 등 조세감면)에 ‘외국인 투자기업인 입주기업체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소득세·취득세·등록세·재산세·종합토지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조세에 관한 사항은 조세법에 규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예외적으로 개별법에 규정되는 경우에도 조세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어야 효력을 발휘한다. 그러므로 개별법에 존재하는 조세감면규정은 선언적 효력만을 가진다. 자유무역지역에서의 조세감면도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이루어진다. 즉,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16조의 2제 9항에서 구체적으로 자유무역지역의 입주업체에 대한 조세감면을 규정하고 있다.<sup>48)</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듯 선언적 규정을 자유무역지역법에 삽입한 것은, 외국인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한 이 법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외국인들의 이해를 돕고 이들의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비록 선언적 규정에 불과하다고 할지라도 조세감면과 관련된 규정을 마련 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는 현실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할 수 있겠다.

## 제 3 절 한국 자유무역지역의 문제점

### 1. 제도적 측면

한국의 자유무역지역이 가지는 제도적 측면의 문제로 첫째, 관세 면제 범

---

48) 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의2제9항에서는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는 업체 중 제조업체의 경우에는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불 이상, 도매업 및 물류업의 경우에는 미화 5백만불 이상인 경우 법인세·소득세 등의 조세감면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위의 실질적인 축소를 들 수 있다. 자유무역지역은 기본적으로 비관세지역으로서 자유무역지역 안에서 입주기업체가 사용·소비하는 물품은 관세를 면제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렇다고 해서 무한정 관세면제를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자격을 가진 업체가 사용·소비하는 일정 범위의 물품에 한하여 관세를 면제하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의 자유무역지역제도가 전체적으로 세제지원의 범위를 확대한 것과는 달리 비관세지역의 가장 큰 특징인 관세면제의 범위는 오히려 축소되었다. 도매업체나 물류업체의 경우 종전과 달리 물품의 사용목적에 따라 관세면제여부가 결정되도록 한 것이 그 원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면제대상물품의 범위는 종전과 같이 Positive방식을 취하고 있으므로 자유무역지역의 법적 성격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두 번째로 화주의 재산권 침해의 우려가 있다. 자유무역지역에 반입되어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에 대하여는 15일 이내에 반출하여야 한다. 그리고 자유무역지역에 반입되어 장치된 물품에 대하여는 보세창고의 보관기간을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보관기간을 경과한 물품은 관세법의 규정에 따라 강제매각 또는 국고귀속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는 종전의 자유무역지역이나 관세자유지역에서는 없었던 신설 의무규정으로 인하여 자유무역지역 사용자인 화주의 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셋째, 여전히 비효율적 측면을 내포하고 있다. 자유무역지역을 지정할 때 산업자원부장관은 별도로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법률상 협의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합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절차간소화의 측면에서 바람직한 제도라고 보기는 어렵다.

자유무역지역은 종전의 자유무역지역에 비하여 비관세지역의 정도가 더 강화되었지만 통제시설의 설치여부로 관세법의 적용여부가 결정된다.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도 통제시설의 설치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유무역지역법이 아닌 관세법이 적용되도록 한 것이다. 결국 통제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자유무역지역은 예정지역이나 더 나아가 비관세지역이 아닌 외국인투자지역 등과도 그 지역의 법적 성격에 있어 차별성을 갖

기가 어렵게 되었다.

## 2. 정책적 측면

정책적 측면의 문제점으로 첫째, 효과적인 인센티브의 부재를 꼽을 수 있다. 자유무역지역은 법인세 등의 직접세 감면뿐만 아니라 임대기간의 확대 및 임대료의 감면 등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많은 혜택을 부여하여 외국인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설치되었다. 그러나 그 혜택은 일정한 규모의 투자기준을 초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무차별적으로 적용되는, 공급자 위주의 양적인 인센티브뿐이다. 즉, 당해 업체의 특별한 사정을 감안한 수요자 위주의 맞춤형 인센티브 지원 시스템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수요자의 다양한 요구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둘째, 항만시설 중심의 치우친 물류정책이 부가가치의 생산을 어렵게 한다. 한국에서는 기본적으로 배후지역 중심의 물류정책보다는 컨테이너 부두 등 항만시설을 중심으로 하는 물류정책을 지속해 왔다. 항만지역에서 물류부가가치활동을 수행할 배후지역을 확보하기가 어려워 단순히 하역 및 보관기능을 수행하는 컨테이너부두를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을 동북아의 물류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 야심차게 도입된 관세자유지역제도는 2002년에 부산항 및 광양항에 처음 지정되어 운영을 개시하였으나, 아직까지 특별한 운영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 3. 운영 측면

운영측면에서 가지는 첫 번째 문제점은 해당지역의 시·도지사에게 자유무역지역에 대한 관리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 않아 당해지역 발전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들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는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자유무역지역의 지



정을 요청할 수는 있다. 그러나 자유무역지역에 대한 관리권한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만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시·도지사는 자유무역지역에 대한 개발계획 및 업체 유치계획 등을 수립하는 지정요청자로서 역할과, 공유재산에 대한 임대료의 감면 및 재산세·취득세·등록세·종합토지세 등의 감면 등 세제혜택을 주는 역할만을 할 뿐, 관리권자로서의 역할이 없다. 따라서 이들의 역할에 따른 지역경제활동 활성화를 기대할 수 없다.

둘째, 일률적인 화물관리 방법으로 효율적인 화물관리가 어렵다. 자유무역지역에는 제조업, 도매업 및 물류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입주기업체와 이들을 지원하는 지원업체가 입주하여 있다. 이처럼 다양한 업종을 영위하는 업체가 입주하고 있음에도 화물관리방법은 모두 같다. 따라서 업종별 특성에 따른 효율적인 화물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셋째, 운영 절차상의 비효율성이다. 자유무역지역에서는 관세면제물품을 제외하고는 관세를 납부한 후 외국물품을 사용 소비하여야 한다. 수입신고는 외국물품이 자유무역지역으로 반입될 때 하도록 하고 있는데, 외국물품이 자유무역지역으로 반입될 때 수입신고 대상물품인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실무적으로 어려운 일이다. 또한 사용·소비하기 전에 미리 관세를 납부하도록 하는 것은 입주기업체에게 관세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부담을 안겨 주게 된다.

뿐만 아니라 자유무역지역에서 하는 수입신고, 물품의 반입·반출·보세 운송신고 등 주요 세관신고절차는 모두 전자문서로 하도록 되어 있다. 구체적 신고절차는 기존 보세구역과 같이 수출입통관 및 화물관리와 관련한 전산시스템을 그대로 준용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런데 기존의 보세구역에서의 화물관리관련 전산시스템이 자유무역지역 화물관리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관련 규정과 전산시스템상의 업무 처리 절차간에 괴리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또 하나의 문제점이다.

## 제 4 장 한국 자유무역지역의 발전방안

### 제 1 절 자유무역지역 발전의 추세

#### 1. 자유지역 발전의 세계적 추세

오늘날 물류 중심형 또는 생산 중심형 자유지역은 생산 및 물류 기능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금융·연구 등 비즈니스 기능이 대폭 강화된 형태의 복합형 자유지역으로 전환되는 추세에 있다. 중국의 푸둥 경제특구, 홍콩·싱가포르 등이 이러한 예로, 복합형 자유지역으로 전환하여 국제 비즈니스의 중심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한국의 경제자유구역도 그 도입 목적이 동북아의 비즈니스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함이었다.

최근의 세계 경제는 정보통신 부문에서의 획기적인 발전과 함께 지식기반 경제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이러한 세계 경제의 흐름에 따라 자유지역의 유형도 새롭게 바뀔 것이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지식과 정보의 창출, 확산, 분배 등 지식가치를 높이는 지식 창조형 자유지역이 새롭게 출현하여 발전하게 될 것이라 보고 있다.<sup>49)</sup>

#### 2. 한국 자유무역지역의 총체적 발전방안

경제자유구역은 한국을 동북아의 비즈니스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즉,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고 나아가 국가경쟁력의 강화와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인 것이다. 경제자유구역은 자유무역지역, 외국인투자지역, 외국인기업전용단지 등에 비해 가장 광범위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 또한 경제자유구역은 사람의 거주가 허용되는 지역으로서, 자유무역지역과 같이 다른 지역과 격리하기 위해 울타리가 설치되는

49) 이창재(2003), p.153, 박재룡외(2002), p.7.

비관세지역은 아니다.

이처럼 경제자유구역은 관세자유지역과 종전의 자유무역지역을 포괄할 수 있는 제도로 도입되었다. 따라서 자유무역지역은 단기적으로는 경제자유구역과 별도의 제도로 존속시키되,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지 실현 전략에 따라 경제자유구역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운영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경제자유구역, 자유무역지역, 외국인투자지역과 외국인기업전용단지 등을 경제자유구역으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통합방안의 하나로 자유무역지역을 경제자유구역 안에서 물류특구와 생산특구로 특화하여 운영하는 것을 검토해 볼 수 있다. 또한 자유무역지역이 비관세지역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경제자유구역 안에서도 다른 지역과 격리되어 운영되어야 한다. 입주기업체들이 충분한 재고관리 시스템과 내부감사체제를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울타리가 없는 자유무역지역의 운영도 가능할 것이다. 또한 자유무역지역을 외국인투자지역 등 다른 지역에 중복하여 지정하는 것도 당연히 허용되어야 한다.

아울러 경제자유구역 안에 특화된 역할을 담당하여 경제자유구역내 경제활동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특구를 설치하는 방안도 고려되어야 한다. 최근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는 R&D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R&D 특구와 금융·국제컨벤션센터·관광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비즈니스 특구 등의 설치가 그 예이다. 즉, 경제자유구역은 가장 광범위한 개념으로 다른 지역을 모두 포괄하면서, 자유무역지역, 외국인투자지역 등이 경제자유구역 안에서 특화된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특화된 지역에 대한 각종 인센티브는 입주업종의 특성을 고려하여 차별화되어야 할 것이다.

## 제 2 절 제도적 측면에서의 발전방안

### 1. 관세면제 대상물품 범위의 확대

현행 자유무역지역법에서 제29조 제1항은 자유무역지역에 반입되는 물품 중 반입신고를 해야 하는 물품<sup>50)</sup>을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29조 제3항은

반입신고 대신 수입신고를 하고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sup>51)</sup>를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수입신고를 하고 관세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관세를 납부하지 않고 외국물품을 사용·소비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제조업체의 경우 ‘기계·기구·설비 및 장비와 그 부분품, 원재료·유탄유·사무용 컴퓨터 및 건축자재, 그 밖에 사업목적의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이하 “관세면제 대상물품”이라 한다)은 수입신고 및 관세의 납부 없이 사용·소비할 수 있다. 도매업체 및 물류업체의 경우에는 관세면제 대상물품 중 당해 사업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물품일 경우에만 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사용 또는 소비할 수 있다. 결국 제조업체의 경우 도매업체나 물류업체에 비하여 관세 면제의 범위가 커지는 것이다.

중전의 관세자유지역에서는 물류업체의 경우 관세부과 대상물품<sup>52)</sup>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사업목적의 해당여부에 상관없이 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도 외국물품을 사용하거나 소비할 수 있었다. 물류업체의 경우 자유무역지역과의 통합이 오히려 관세면제 대상물품의 범위를 축소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한편 자유무역지역의 관세 면제 물품의 규정 방식은 해당물품을 열거하는 positive방식이다. 비관세지역은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지역을 의미하므

- 
- 50) 반입신고가 필요한 물품은 ①외국물품(이적화물 및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제외한다)과 ②입주기업체가 자유무역지역 안에서 사용 또는 소비하고자 하는 내국물품 중 관세 등의 면제 또는 환급을 받고자 하는 물품으로서 기계설비와 그 부분품, 원재료, 유탄유, 사무용 컴퓨터 및 건축자재 기타 사업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관세청장이 인정한 물품 등이다.
- 51) 자유무역지역법상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는 ①입주기업체 이외의 자가 외국물품을 자유무역지역 안으로 반입하고자 하는 경우 ②수출을 주목적으로 하거나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제조업종의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또는 관리권자가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의 거쳐 국제물류의 원활화, 지역개발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수목적의 국내기업이 자유무역지역 안에서 사용 또는 소비하기 위하여 외국물품(기계설비와 그 부분품, 원재료, 유탄유, 사무용 컴퓨터 및 건축자재 기타 사업목적 달성에 필요한 물품 등은 제외)을 자유무역지역 안으로 반입하고자 하는 경우 ③도매업체나 물류업체가 자기가 직접 사용 또는 소비하기 위하여 외국물품을 반입하는 경우 등으로 열거되어 있다.
- 52) 관세자유지역에서 관세부과 대상물품은 식음료품·담배·유류(전기를 포함한다)·주류등 소비재와 후생복지용품, 사무용 컴퓨터를 제외한 사무용비품 및 소모품, 관세자유지역과 관세영역에서 검용하고자 하는 물품과 동 부분품, 기타 사업목적의 달성에 직접 소요되지 아니한다고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물품이 이에 해당된다.

로, 모든 물품에 대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비관세지역에서 정책 목적상예외적으로 과세할 필요성이 있는 물품이 존재할 경우, 과세대상물품을 별도로 규정하고 나머지는 면세를 하는 negative방식이 바람직하다. 즉, positive방식은 비관세지역을 표방하는 자유무역지역의 성격과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다.

결국 동북아 물류중심지 육성을 표방하는 자유무역지역이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한 물류업체에 대하여 관세자유지역보다 세제 혜택의 범위를 축소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따라서 관세자유지역의 장점을 받아들여 종전과 마찬가지로 면세 범위를 확대하고, 그 규정 방식에 있어서도 Negative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 2. 장치기간 제한제도의 폐지

보세구역에 장치된 외국물품에 대하여 장치기간을 설정하는 이유는 관세채권을 조기에 확보하고 보세구역의 공간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이다. 개정된 자유무역지역법에는 자유무역지역 중 공항만으로서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에 반입된 물품에 대하여는 반출의무를 부여할 수 있거나 보세창고의 장치기간 등을 준용하는 규정이 신설되었다. 즉 동 지역에 반입되어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에 대하여는 15일 이내에 자유무역지역에서 반출하여야 하고, 동 지역에 반입되어 장치된 물품에 대하여는 보세창고의 장치기간을 준용하여 장치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관세법의 규정에 따라 강제매각 또는 국고귀속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현재 따라서 관세법 제17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해진 보세창고의 장치기간을 보면 인천공항·김해공항의 역내 보세창고와 인천항의 부두 내 보세창고 그리고 부산항의 컨테이너전용보세창고의 경우에는 3월, 그 외에는 원칙적으로 1년이다.<sup>53)</sup> 장치기간을 경과한 물품은 국가가 강제로 매각할 수 있으며 그 절차는 관세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이러한 보세구역의 장치기간은 대체적으로 길어지거나, 종합보세

---

53) 보세화물장치기간 및 체화관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04-13호) 제3조 제5항.

구역이나 관세자유지역 등에서는 장치기간을 설정하지 않는 등 기간의 제한을 폐지하는 추세로 진행되어 왔다.

장치기간의 장단에 따른 이해관계는 보세구역이나 자유무역지역에 설치된 물류시설의 이용자인가 또는 운영자인가에 따라 달라진다. 화주의 입장에서 보면 장치기간은 물품의 보관기간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물품에 대한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당할 가능성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장치기간이 길거나 제한 자체가 없는 것을 선호한다. 반면 창고 등 물류시설을 운영하는 업체의 입장에서는 화물의 유통주기가 빠를수록 영업이익이 증가할 것이므로, 짧은 장치기간을 선호한다.

한편 1990년대 이후 제3자 물류(Third Party Logistics ; TPL)<sup>54</sup>가 물류업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 동북아 물류중심지로의 도약이라는 한국의 목표와 자유무역지역의 도입목적의 하나인 국제물류의 활성화도 결국 이러한 전문적인 물류업체의 유치를 통하여 이루어 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제3자 물류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장치기간의 제한 등이 제약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비록 예외적이라고 하더라도 자유무역지역에 반입되어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에 대하여 반출의무를 부여하고, 보관중인 화물에 대하여 관세법의 규정에 의한 장치기간, 매각절차 등을 준용하도록 하는 것은 자유로운 물류활동의 보장이라는 자유무역지역 본래의 의미를 잃게 한다. 따라서 자유무역지역에서는 이러한 의무나 제한을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장치기간을 제한하거나 반출의무를 부여하는 이러한 규정의 신설이 보관 등 단순 물류서비스만을 제공하는 공항만 지역의 물류공간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물류시설이 부족하여 발생하는 물류지체를 해소하기 위해 것이라면, 이러한 지역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지역에서 제외하는 것이 오히려 나을 것이다.

### 3. 자유무역지역 지정절차의 간소화

---

54) 제3자물류란 전문 물류기업이 고객서비스 향상, 물류비 절감 등 물류활동을 효율화할 수 있도록 공급사슬(Supply Chain)상의 기능 전체 혹은 일부를 대행·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자유무역지역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가 지정을 요청하면 산업자원부장관이 자유무역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데, 이때 산업자원부장관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에 대하여 재정경제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양 장관의 협의는 자유무역지역 지정의 실제적 효과가 대부분 세제혜택이므로 조세정책을 총괄하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자유무역지역의 지정을 남발하는 것을 방지하고 관련기관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재정경제부가 참석하는 자유무역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을 다시 재정경제부장관과 사전협의를 하도록 규정한 것은 실질적으로 불필요하다. 또한 법률상으로는 협의에 불과하지만 사실상 합의에 해당하는 구속력을 가지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절차의 간소화 측면에서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그러나 자유무역지역의 지정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경제정책의 조정 차원에서 협의하는 것으로 해석할 경우, 자유무역지역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재정경제부가 조정권을 행사하는 것으로도 충분할 것이다. 또 지정 요청자가 지정요청을 하고자 할 때에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시·도지사와의 협의하도록 하는 절차가 있으므로 이때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인 절차라고 본다.

#### 4. 통제시설 설치요건의 강화

자유무역지역법 제3조 제1항은 “자유무역지역에서는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관세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자유무역지역에 제5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통제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자유무역지역에 관세법을 적용할 것인지의 여부는 통제시설의 설치여부를 그 기준으로 하고 있다.

통제시설의 설치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요건 중 하나으로써, 지정할 당시에 이미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계획이 확정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일반적으

로 자유무역지역의 경우 관세자유지역과는 달리 지정 후 개발하게 되므로, 개발이 완료되기 이전에는 통제시설이 설치되기 어렵다. 또한 단계적으로 개발이 이루어지는 경우, 먼저 개발이 이루어진 지역에 업체가 입주하여 사업을 하고 있더라도 통제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자유무역지역법에 의한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물론 외국에서 반입하는 시설재는 관세법이 적용되더라도 자유무역지역법에 의하여 관세 등을 면제받을 수 있으나, 국내에서 반입하는 시설재나 원재료에 대하여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결국 자유무역지역법에 의하면 자유무역지역의 법적 지위를 우리나라의 관세선 밖에 있는 비관세지역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제시설이 설치되기 이전에는 관세영역과 동일하게 취급되는 것이다.

이처럼 통제시설이 설치된 경우에만 자유무역지역법을 적용하도록 한 것은 예정지역에 대한 세제혜택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관세자유지역의 경우에는 선개발 후지정 방식이기 때문에, 개발단계에서 예정지역으로 지정되더라도 아무런 혜택도 부여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때문에 공항만의 배후지역 개발의 지연문제가 이미 제기된 바 있다. 그러나 자유무역지역에서는 예정지역에 대하여도 시설재에 대하여는 관세 등을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자유무역지역의 법적 성격을 관세선 밖의 비관세지역으로 일관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통제시설의 요건의 강화가 필요하다. 즉, 통제시설이 설치된 경우에만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하고, 통제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정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외국의 경우에도 자유지역의 법적 성격을 비관세지역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타 지역과 격리하고 있으며, 관세를 납부하지 않은 외국물품이 국내로 불법적으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울타리 등을 설치하여 다른 지역과 구분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제 3 절 정책적 측면에서의 발전방안



## 1. 효과적 인센티브 정책의 도입

한국은 지리적으로 세계 제2의 경제대국인 일본과 21세기 경제대국으로 부상할 중국 사이에 위치하고 있어, 동북아의 경제활동과 국제물류의 최적 지로서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중국경제가 풍부한 저임금의 인적자원과 광대한 잠재시장을 바탕으로 세계의 공장으로서 급성장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제회복이 가속화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이러한 지리적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빠른 시일내에 동북아 중심 국가로서의 위상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지정학적 여건이 오히려 우리 경제의 생존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 이미 제기된 바 있다.<sup>55)</sup>

이에 따라 홍콩과 대만에서는 이미 제조업의 공동화 현상마저 나타나고 있고, 그 여파가 한국과 일본에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이 선택한 전략 중 하나가 물류중심지화와 함께 제조업 기반을 되살리기 위한 외국인투자유치이다.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정부는 외국인투자의 중요성을 인식하였고,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와 정책을 내어 놓았는데, 자유무역지역제도도 그 중 하나이다.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다른 제도와 마찬가지로 자유무역지역에서도 법인세 등 직접세의 감면과 국·공유 재산의 임대와 임대료의 감면, 각종 규제의 완화 등을 인센티브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그것들은 모두 일정한 규모의 투자기준을 초과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하여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공급자 위주의 양적인 인센티브들이다.

이러한 공급자 위주의 양적인 인센티브 제공만으로는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한 업체의 다양한 사정을 고려한 효과적인 지원이 어렵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각 외국인 투자기업의 특별한 사정을 감안하여

---

55) 1997년의 Booz · Allen & Hamilton은 ‘한국보고서’에서 한국의 제조업 기반은 광대한 배후시장과 저임 노동력을 바탕으로 한 중국에 밀리고, 첨단기술은 일본에 치이는 너트크래커(nut-cracker)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을 제기하였고, 2001년 개최된 동북아 경제포럼에서는 향후 5년 내에 선진경제 기반을 확실히 구축하지 못하는 경우 중국과의 경쟁에서 도태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

인센티브를 차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맞춤형 인센티브 지원시스템이 필요하다.

맞춤형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우선 외국인 투자기준의 인하와 제공되는 인센티브의 상한선이 정해져야 한다. 투자금액을 기준으로 인센티브의 제공수준을 달리 할 수 있으므로, 인센티브의 상한선은 현재의 외국인 투자기준에 준하는 수준이면 적당하다고 생각된다.

맞춤형 인센티브의 제공은 업체의 입주과정에서 관리권자가 유치에 대한 상담을 하면서 외국인 투자금액, 업종 및 투자동기, 경영상 애로사항 등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맞춤형 인센티브는 개별 기업별로 인센티브의 종류 및 제공수준을 달리 정할 수 있으므로, 외국인투자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게 합당한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한편 인센티브 제공의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투자금액 및 고용인원에 따라 인센티브 제공기준을 세분화되어야 하며, 인센티브의 종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되 특정 인센티브를 포기하는 경우 다른 종류의 인센티브를 더 많이 부여하는 것도 대안으로 고려 될 수 있다.

## 2. 균형적인 물류정책의 수행

관세자유지역은 보세구역과 같이 단순한 보관기능보다는 고차원적인 물류 부가가치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이는 충분한 면적의 배후지역을 확보하고 세계적인 전문물류기업을 유치하는 경우에 보다 고차원적인 물류부가치활동이 가능하다. 한국은 1999년에 관세자유지역제도를 도입하고, 2002.1.1 처음으로 부산항과 광양항을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하여 운영을 개시하였으나, 현재까지 동 지역에서 물류활동상 커다란 변화는 없다.

그러나 지금까지 배후지의 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배후지의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지역을 성급히 부두만을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하였기 때문에, 지정에 따른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처럼 관세자유지역의 지정 및 운영효과가 미흡한 것은, 그 동안 우리나라의 물류기반시설의 경쟁력이 취약하였기<sup>56)</sup> 때문에, 배후지역 중심의 물류정책을 수행하기 보다는 새로운 공항이나 항만의 건설 및 확장 등 물류기반시설의 확충에 치중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항이나 항만의 배후에 부가가치 물류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종합물류단지를 개발하고, 이들 종합물류단지를 중심으로 하는 균형적인 물류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 제 4 절 운영 측면에서의 발전방안

### 1. 시·도지사에게 관리권 부여

시·도지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함께 자유무역지역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는 지정요청자이다. 지정 요청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시·도지사와 협의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자유무역지역 기본계획을 작성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때 지정요청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실상 관리권자에 해당하는 산업자원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에 한정되고, 시·도지사의 경우에는 지방산업단지 또는 농공단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와 항만 및 공항의 배후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한정될 것이다.

그런데 같은 지정요청자인 중앙행정기관의 장과는 달리 시·도지사에게는 관리권이 없으므로, 시·도지사가 자유무역지역 지정을 받고 개발을 하더라도 그 관리권은 관리권자에게 이양해야 하도록 하고 있다. 결국 자유무역지역의 지정과정에서 시·도지사의 역할은 매우 한정적인 것이다. 시·도지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함께 공동지정요청자로서의 명의를 대여하는 역할 이외에는 사실상 할 일이 없다.

지정요청자의 역할 이외에 시·도지사는 입주기업체에 대하여 지방세 감

56) IMD의 2002년 우리나라 국가경쟁력 평가에 의하면 우리나라 사회간접자본 투자수준은 세계 21위, 물류기반시설의 경쟁력은 23위에 해당한다.  
김진혁(2003), p.31에서 인용

면 및 공유재산에 대한 임대료 감면 등의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의 토지 또는 공장 등을 50년의 범위 내에서 임대하거나 매각할 수 있고, 그 임대료를 감면하거나 매각대금에 대한 납부기간의 연장 또는 분할 납부를 하게 할 수 있으며, 공유의 토지에 시설물 등을 축조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미국 등 다른 나라의 경우, 자유지역의 활성화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시·도지사 등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판단할 때, 시·도지사가 지정요청자로서의 제한적인 역할만을 한다면, 자유무역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시·도지사의 적극적인 역할을 끌어내기 어렵다. 따라서 자유무역지역의 지정요청자이자 인센티브의 제공 주체로서, 자유무역지역에 대한 관리권한을 가지고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도지사에게도 관리권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sup>57)</sup>

## 2. 사용·소비 시점에서 수입신고

자유무역지역법 제29조 제3항에서는 자유무역지역에 반입하는 물품 중 관세법 제241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를 하고 관세를 납부하여 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수입신고를 하고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시점을 외국물품이 자유무역지역으로 반입되는 때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수입신고 및 관세납부 시점만을 고려할 때 보세구역보다 불리하다. 보세구역의 경우 외국물품을 보세구역에 반입할 때 수입신고를 하고 관세를 납부하는 자유무역지역과는 달리, 사용 또는 소비하고자 할 때 수입(사용)신고를 하면 되기 때문이다.

자유무역지역이 원칙적으로 비관세지역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특정 물품이 정책목적상 과세대상물품에 해당하더라도 반입되는 시점에 수입통관절차를 완료해야 한다는 것은 자유무역지역의 법적 성질에 부합하지 않는다.

---

57) 자유무역지역법 제5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권자는 그 권한 중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탁할 수 있으므로 시·도지사의 경우에도 관리권한의 일부를 행사할 수 있으나 관리권자인 경우와 관리권자로부터 그 권한의 일부를 위임받은 경우는 다르다.

통관절차를 이행하는 세관의 경우에도 물품이 반입될 때 사용 또는 소비하는 물품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는데, 사전에 이러한 목적을 파악하여 과세를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다.

뿐만 아니라 사용 또는 소비하고자 하는 물품은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시점에 수입신고를 하고 관세를 납부하는 것이 과세이론에 합당하다. 수입신고를 해야 하는 입주업체의 입장에서도 보아도 사용 또는 소비되는 시점에 관세를 납부하는 것이 미리 관세를 납부하는 것보다 자금 부담이 적을 것이다. 또한 반입할 때 수입신고를 하게 되면, 반입되는 물품의 용도가 사용 또는 소비하는 것으로 변경되더라도 수입신고를 할 필요가 없게 되어 관세를 탈루할 우려가 있으며, 반대의 경우 납부한 관세를 환급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자유무역지역에 반입되는 외국물품이 과세대상이 되는 물품이라고 하더라도 반입시점이 아닌 사용 또는 소비하는 시점에서 수입신고를 하고 관세를 납부하는 것이 타당하다.

### 3. 입주업체의 특성별로 화물관리방법 차별화

자유무역지역에서의 화물관리는 특정 물품에 대한 반입신고와 업체의 자율적인 재고관리 및 세관의 사후조사로 이루어진다. 세관은 반입신고를 통하여 획득한 화물정보를 기초로 특정 물품의 불법반출 여부 및 이동경로를 파악하고, 재고조사를 통한 사후조사로 업체의 재고관리가 적정한지를 확인한다.

그리고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은 제조업, 도매업, 물류업 및 지원업이다. 이 중 지원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는 외국물품을 사용할 수 없으므로, 기본적으로 세관의 화물관리 대상이 아니다. 결국 자유무역지역에서 세관의 화물관리대상이 되는 업체는 제조업체, 도매업체 및 물류업체로 한정된다.

이 중 도매업체와 물류업체의 경우는 가공·보수 등의 단계를 거치더라도 대부분 반입 물품의 형상이 유지되기 때문에 사후에 실물확인이 가능하다.

그러나 제조업의 경우에는 원재료에 물리적·화학적 변화를 주어 부품이나 반(완)제품 등을 생산하게 되므로,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원재료와 생산된 제품 사이에서 동일성을 찾기는 어렵다.

따라서 도매업체나 물류업체의 경우 반입물품의 사후확인이 용이하고 재고관리가 간단하나, 제조업체의 경우 반입물품과 반출물품의 동일성 확인이 어려우므로 외국물품이 불법적으로 유출되는 것을 차단하기 어렵고, 재고관리절차가 복잡해 사후조사 등을 통한 재고관리의 적정여부 확인에 많은 시간과 인력이 소요된다. 따라서 업종별로 화물관리방법에 차이를 두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불구하고, 자유무역지역법은 모든 입주기업체가 동일한 방법으로 반입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실 도매업체나 물류업체는 일반적인 반입신고만으로도 화물관리에 별다른 지장이 없는 것이 사실이다. 반면 제조업체의 경우에는 관세법상 보세구역의 반입신고와 같은 일반적인 수준의 신고만으로는 화물의 추적관리가 불가능하므로 제조업체의 경우에는 다른 두 업체와는 다른 방식의 신고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

자유무역지역 이전의 수출자유지역에서는 보세공장과 동일하게 반입신고 및 사용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화물관리가 이루어져 왔다. 수출자유지역이 자유무역지역으로 개편된 이후 사용신고가 폐지되었기는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수입통관시스템의 수입신고서식을 사용한 전자문서로 반입신고를 하였다. 따라서 종전의 자유무역지역에서는 제조업체가 사용·소비하기 위하여 반입하는 원재료 및 시설재에 대한 신고는 명칭만 반입신고였을 뿐 사실상은 사용신고와 동일하였다.

이처럼 종전 자유무역지역의 외국물품 반입신고가 수입신고방법과 동일<sup>58)</sup>하게 운영되게 된 이유는 수입통계 계상문제와 원산지 문제 때문이었다. 자유무역지역에서 제조·가공하기 위하여 외국물품을 사용하는 것은 유엔통계협약상 그 나라의 수입통계로 계상하게 되어 있다. 원산지의 경우에도 그 나라에서 완전생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편적으로 HS품목분류 방식에 의한 세 번 변경이나 부가가치기준에 의하여 원산지를 판정하게

---

58) 사용신고와 수입신고는 동일한 전자문서를 사용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신고한다.

되므로, 단순한 반입신고만으로는 원산지 결정이 불가능하다.

반면에 물류업체의 경우 원산지가 바뀔 정도의 커다란 세번변경이나 부가가치가 발생하는 경우는 드물고, 물류활동에 대하여는 수입통계로 계상하지 아니하므로, 단순한 반입신고에 따른 문제점은 전혀 없다.

따라서 제조업체의 경우 이러한 수입통계의 계상 등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외국물품의 사용 시 수입통계의 계상에 필요한 최소한의 사항을 신고하도록 하거나, 수입통계 계상에 필요한 내용을 사후 일괄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자유무역지역의 경우 절차간소화를 위하여 사용신고를 폐지하였던 만큼, 신고내용을 축소하였더라도 사전에 수입통계 계상을 위해 별도의 신고를 하도록 하는 것은 자유무역지역의 기본 정신에 위배되는 것이다.

따라서 재고화물관리 및 수입통계 계상목적을 위하여 사후에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일괄적으로 사용물품에 대한 최소한의 내역을 신고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 4. 특성에 따른 전산시스템 구축

일찍이 관세청은 통관업무의 전산화를 추진하여 1993년부터 추진한 「전산화 6개년 종합계획」 및 2000년의 「정보화 3개년 종합계획」에 의하여 세관통관 관련 주요 업무가 전산화되었다.

이에 따라 현재 자유무역지역에서 수입신고 및 화물의 반입신고 등을 비롯한 주요 세관절차는 실무에서 모두 기존의 수출입통관 및 화물관리관련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다 보니 자유무역지역과 보세구역의 차이점이 전산시스템에 완전히 반영되지 못하고 업무처리방식이 종전의 보세구역과 동일한 방식으로 처리되고 있어, 규정과 전산시스템간의 괴리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또 이러한 전산시스템 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종전의 자유무역지역 입주업체들은 세관신고를 위한 전산시스템도 완전하지 못한 상태이다. 그러므로 현재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한 제조업체의 경우 반입신고 및 재고관리를

등을 위한 전산시스템의 구축이 절대 필요하다. 왜냐하면 세관통관업무는 이미 100% 전산화가 완료되어 전자신고가 아닌 방법으로는 통관관련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더욱이 자유무역지역에서 세관의 통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업체 자체의 내부관리체제가 잘 갖추어져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유무역지역에서는 관련규정과 업무처리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고 단순히 기존 보세구역의 업무처리에 사용되는 전산시스템을 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전산시스템의 운용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자유무역지역의 특성에 맞는 전산시스템을 새로이 구축하거나, 자유무역지역의 특성이 반영되어 업무처리에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존 전산시스템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자유무역지역의 특성에 맞는 전산시스템을 새로이 구축하는 경우, 반드시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의 재고관리 프로그램을 포함하여야 하며, 세관의 통관업무와 관련된 각종 전산시스템과 연계되어야 한다.

이것은 세관의 재고기록의 적정여부를 확인 시 이에 대한 조사를 용이하게 할 뿐만 아니라 자유무역지역에 대한 세관의 통제를 완화, 업체의 자율성을 제고하여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업체 입장에서도 일개의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외국물품의 재고관리는 물론 각종 세관신고 등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업무 간소화를 달성할 수 있다.



## 제 5 장 결 론

지금까지 한국의 자유무역지역의 현황과 제도적·정책적·운영측면의 문제점, 그리고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자유지역이라 함은 일정한 범위의 구획을 정하여 통관절차, 관세 등의 면제특전과 물품의 반출입 및 중계 등을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는 법적, 지리적 경제활동 특별지구로써, 외국과 유사한 지위를 갖는다. 이러한 자유지역의 효시는 중세 이탈리아의 자유항으로, 프랑스, 독일, 영국 및 미국 등으로 확산되었으며, 1970년에 한국에도 마산수출자유지역이 처음으로 설치되었다.

자유지역은 지정지역의 특성과 수행기능에 따라 다양한 종류로 구분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현재 한국에서 설치·운영되고 있는 자유무역지역을 중심으로 그 모태가 되는 관세무역지역과 자유무역지역에 대하여 상세히 살펴보았다. 관세자유지역은 우리나라를 동북아의 물류중심국가로 육성하기 위해 일정요건을 갖춘 주요 공항만을 대상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의 지정요청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물류중심형 자유지역이며, 통합되기 이전의 자유무역지역은 외자유치·수출촉진 등을 목적으로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생산중심형 자유무역지역으로 관세자유지역과 다소 차이가 있으나 기본적으로 양자는 유사한 제도이다.

이러한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관련부서 및 근거 법령을 달리하여 따로 운영하는 것은 불필요한 혼란과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저하시켜 외국인 투자유치의 걸림돌이 되었다. 또한 제조 기능이 없는 관세자유지역의 경우 외국 물류업체의 유치에 한계가 있어, 2004년부터 관세자유지역이 자유무역지역으로 통합되었다.

이에 따라, 자유무역지역의 근거법률이 되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도 개정되었다. 먼저 관세자유지역을 자유무역지역으로 일원화하고 관리권자의 전문화 및 다양화, 입주 자격의 완화, 지자체 소유토지 및 공장 등의 임대 및 매각의 특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임대료 감면, 관세 등의 면제 및 환급 등 세제혜택 범위의 확대 등이다.

또한 통합된 자유무역지역은 종전의 자유무역지역에 비하여 비관세지역화의 정도가 강화되었으며 예정지역에 대하여도 관세 면제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종전의 역외가공승인이 신고제도로 바뀌었다.

그러나 분리운영의 비효율성의 극복을 위하여 법령을 개정하고 새로운 자유무역지역을 운영하였으나, 여전히 몇 가지 한계점을 갖고 있다. 우선 제도적 측면에서, 관세면제대상 물품의 범위가 종전에 비해 다소 축소되었고, 공항만 지역 중 관세청장이 정하는 지역에서는 장치기간이 제한되며, 통제시설의 설치여부로 자유무역지역의 법적 성격이 결정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

정책적 측면에서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은 공급자 위주의 양적인 지원제도만 있을 뿐 수요자 위주의 맞춤형 지원제도가 없고, 배후지역 중심의 물류정책보다 항만시설을 중심으로 하는 물류정책을 지속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운영 측면에서, 새로운 자유무역지역은 여전히 시·도지사에게 대하여 관리권을 부여하지 않아 지역 내 무역활동에 있어 이들의 역할이 십분 활용되지 않고 있으며, 입주업종에 따른 화물관리방법이 차별화되어 있지 아니하며, 과세대상물품의 경우 반입할 때 수입신고를 하고 관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며, 각 지역 특성에 맞는 전산시스템의 구축이 미비하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제도적 측면의 발전방안으로는 먼저 물류 및 도매업체에 대한 관세면제 범위를 종전과 같이 확대하고, 자유무역지역이 물류중심지로서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장치기간의 제한 등을 폐지하여야 한다.

그리고 자유무역지역 지정 시 재경부장관과의 협의를 생략하도록 하여 지정절차를 간소화하고, 통제시설 설치요건을 강화하여 자유무역지역의 법적 성격을 일관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책적 측면에서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인센티브 정책을 도입하여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이익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종전의 항만시

설 중심의 물류정책에서 배후지역 중심의 물류정책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운영 측면에서 시·도지사에게 대하여 자유무역지역의 관리권을 부여하고,  
과세대상물품의 수입신고는 사용·소비하는 시점에 하도록 하며, 입주업체  
의 특성별로 화물관리방법을 차별화하고, 자유무역지역의 특성에 맞는 전  
산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 참 고 문 헌

- 관세청,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004.
- 관세청, 『관세자유지역 업무 편람』 2001.8.
- 길광수, “우리나라 관세자유지역제도의 이해”, 『해양수산 동향』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0.5.
- 김범중, “외국의 자유항제도와 우리나라자유항 설치가능성 검토”, 『해운산업 동향』 해운산업연구원 1990.7.
- 김정간, 『마산자유무역지역의 새로운 도약과 당면과제』, 마산자유무역지역 기업협회, 2002.
- 김진혁, “물류산업의 현황과 과제”, 『삼성경제연구소 Issue Paper』 2003.
- 산업자원부, 보도자료, 2005.
- 산업자원부, 보도자료, 2004.
- 삼성경제연구소, “경제특구의 성공적 추진방안”, 『CEO Information』 2002.
- 이언오·박재룡, “왜 경제특구가 필요한가?” 『한국경제생존프로젝트 경제특구』 삼성경제연구소, 2003.
- 이창재, “경제특구의 유형 및 발전방향”, 『한국경제생존프로젝트 경제특구』 삼성경제연구소, 2003.
- 재정경제부,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방안(정부시안)”, 2002.7.29.
- 재정경제부, “보도자료(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 관련 세제지원방안 문답자료), 2002.7.
- 전영재, “외국기업 유치 부진과 반전의 해법”, 『삼성경제연구소 CEO Information』 2003.
- 전영재, “동북아 중심국가,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LG주간경제』 2003.3.19.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관세자유지역 중장기 발전방향 연구” 2002.
- WCO, Kyoto Convention, 2000.
- ILO/UNCTC, “Economic and social effects multinational enterprises in export processing zones”, 1998.

## 저작물 이용 허락서

학 과	무역학과	학 번	20057804	과 정	석사과정
성 명	한글 : 장 개                      한문 : 張 凱                      영문 : Zhang Kai				
주 소	광주시 동구 서석동 375번지 조선대학교 기숙사				
연락처	E-MAIL : cacahan0301@hanmail.net				
논문제목	한글 : 한국자유무역지역제도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영문 : A Study on the Development Plan of Free Trade Zone System in Korea				

본인이 저작한 위의 저작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아래 조선대학교가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동의합니다.

- 다                      음 -

1. 저작물의 DB구축 및 인터넷을 포함한 정보통신망에의 공개를 위한 저작물의 복제, 기억장치에의 저장, 전송 등을 허락함
2. 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의 편집·형식상의 변경을 허락함. 다만, 저작물의 내용변경은 금지함.
3. 배포·전송된 저작물의 영리적 목적을 위한 복제, 저장, 전송 등은 금지함.
4. 저작물에 대한 이용기간은 5년으로 하고, 기간종료 3개월 이내에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저작물의 이용기간을 계속 연장함.
5.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출판을 허락을 하였을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대학에 이를 통보함.
6. 조선대학교는 저작물의 이용허락 이후 해당 저작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타인에 의한 권리 침해에 대하여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
7. 소속대학의 협정기관에 저작물의 제공 및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저작물의 전송·출력을 허락함.

**동의여부 : 동의( 0 )      반대(      )**

2 0 0 7    년    6    월    8    일

저작자:    장    개    (서명 또는 인)

**조선대학교 총장 귀하**